

書啓에 대한 考察

이 강 육*

1. 머리말
2. 書啓의 성립
1) 태조~예종대의 書啓 2) 성종대의 書啓
3) 연산군·중종대의 書啓 4) 인종·명종대의 書啓
5) 선조·광해군대의 書啓
3. 書啓의 형식
1) 法典과 史料 등에 나타난 書啓의 형식
2) 文書와 謄錄 등에 나타난 書啓의 형식
4. 書啓의 분류
1) 傳諭書啓 2) 奉審摘奸書啓
3) 御史書啓 4) 看病書啓
5) 其他 書啓
5. 맺음말

1. 머리말

조선시대에 국왕과 신하는 말과 글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에 言官의 역할을 수행했던 臺諫들도 말과 글로 국왕에게 자신들의 의견을 전달하였다.¹⁾ 조선시대의 국정기록물인 朝鮮王朝實錄, 『承政院日記』, 『日省錄』의 내용도

* 한국승정원일기연구소 소장.

1) 최승희는 조선 초기의 대간이 言官으로서 言論하는 방법을 말과 글 두 가지로 나누고, 그 중 말로 하는 방법으로는 국왕과 대면하여 진술하는 것이 있고, 글로 하는 방법으로는 上疏·上書·劄子·封章 등이 있다고 하였다. 목정균은 조선시대 制度 言論의 전달 수단을 직접 전달 수단과 간접 전달 수단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구두 전달과 문자 전달로 나누어

국왕과 신하 사이에 주고받은 문서와 대화를 기록한 것이 대부분으로, 국왕과 신하가 의사소통한 내용을 기록한 책이라고 바꾸어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겠다. 그중 신하가 국왕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중 말로 아뢰는 것은 '口啓'라고 하고, 글로 아뢰는 것은 '書啓'라고 하였다.²⁾ 이처럼 書啓의 본래 의미는 '글로 아뢰다.'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다.'였다.

한편 '書啓'는 조선시대에 신하가 국왕에게 올리는 上達文書의 일종이기도 하였다. 특히 왕명을 수행한 관원이 수행결과를 국왕에게 보고할 때 書啓를 사용하였다. 『銀臺便攷』에는 “偕來의 명을 받은 관원이 보고하는 附奏는 五部の 안에서 올리면 書啓로 올리고 지방에서 올리면 狀啓로 올린다.”³⁾라고 하였다. 이 규정은 書啓가 狀啓와 다르면서도 유사한 기능을 가진 문서의 일종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실제로 조선후기의 史書인 『承政院日記』와 『日省錄』에도 신하가 국왕에게 올린 書啓의 내용이 다수 실려 있다. 그중 大臣 등에게 傳諭한 관원이 그 결과를 附奏와 함께 보고하는 傳諭書啓와 御史가 임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御史書啓는 대표적인 書啓의 일종이었다.⁴⁾ 그 외에도 문서로서의 書啓가 일부 남아있고, 書啓의 내용을 베껴 엮은 책들도 전해지고 있다.⁵⁾

서 서술하였다. 최승희, 1997 『朝鮮初期 言官·言論研究』, 서울대학교 출판부, 33면; 목정균, 1985 『朝鮮前期 制度言論研究』,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151-164면.

- 2) 『태종실록』 권20, 10년 10월 29일 壬戌 “一, 紙之爲用廣矣. 凡公私書啓, 大小喪葬, 莫不用之.”; 『세종실록』 권99, 25년 1월 3일 己未 “臣等以爲若非口啓公事, 則屬諸司謁, 轉授中官, 庶幾事不淹滯, 似爲便益.”; 『선조실록』 권69, 28년 11월 20일 戊子 “同僚等曰: ‘所當具啓, 而既以所聞不能自信, 則以不能自信之言, 至於書啓, 亦爲未安.’ 云. 臣以爲: ‘姑待入侍之日, 從容以所聞, 具以口啓, 如何?’ 僚意皆以爲然, 故不即書啓矣.”
- 3) 『銀臺便攷』 「吏房攷」 偕來 “凡偕來附奏, 部字內則書啓, 外方則狀啓.”
- 4) 이에 대해서는 뒤의 '書啓의 分類'에서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 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書啓만을 수록한 책자 형태의 『別軍職書啓草冊』(奎7871의 1), 『宣傳官書啓草冊』(奎7871의 2), 『書啓謄錄』(奎13018), 『書啓輯錄』(奎15083-v.1-9), 『湖南書啓草』(古5120-70), 『東來御史書啓』(古6370-1), 『晚翠公黃海道暗行御史書啓抄』(古4255.5-5) 등이 있고, 御史나 使臣의 임무를 수행한 기간의 기록 안에 書啓를 함께 수록한 책자 형태의 『繡衣錄』(古4250-102), 『聞見事件』(奎7767-2), 『南行錄』(古4259-53), 『西繡日記』(古4790-29) 등이 있으며, 문서 형태의 書啓로는 초본인 姓名 미상의 京畿道暗行御史가 올린 書啓(2책 125063), 全羅左道暗行御史 李萬教가 올린 書啓(2책 120778), 忠淸左道暗行御史 中學이 올린 書啓(2책 159173) 등 총 3건이 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書啓는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하나는 ‘글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다.’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書啓’라는 독립적인 문서로서의 의미이다. 書啓의 이런 두 가지 의미는 조선시대의 전기와 후기를 막론하고 줄곧 유지되었다. 그렇다면 그중 문서로서의 書啓는 언제 성립된 것이며, ‘글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다.’라는 의미인 ‘書啓’와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문서로서의 書啓는 어떤 형식으로 작성되었는가? 마지막으로 書啓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이 논문은 이상 3가지의 自問에 대한 自答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自問自答을 통해 문서로서 書啓의 성립 과정과 문서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君臣의 의사소통 수단으로서 書啓의 의미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문서로서 書啓의 성립 시기 및 口啓의 상대적 의미인 書啓와의 관련성은 조선 전기의 實錄에 출현하는 書啓의 용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특히 書啓의 용례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성종~선조에 이르는 기간에 주목하려고 한다. 書啓의 문서형식은 法典과 官署志 등에 실려 있지 않아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조선후기에 편찬된 便攷 및 條例 등의 자료를 참고하고 현재 남아있는 書啓 등을 분석하여 그 문서형식을 추적해볼 생각이다. 書啓의 내용에 대해서는 書啓가 다수 실려 있는 『日省錄』의 사례를 분석하여 분류해보려고 한다. 그중 正祖代 『日省錄』에 실려 있는 書啓의 사례를 뽑아 내용에 따라 분류하여 書啓의 내용 및 용도를 밝혀 보려고 한다.

2. 書啓의 성립

1) 태조~예종대의 書啓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것과 같이 朝鮮王朝實錄에 書啓가 등장하는 횟수는 총 3,523건인데, 그중 절반이 넘는 1,994건이 성종~선조 기간에 나타난다.⁶⁾ 같

6) 이런 수치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에서 검색하여 얻은 것으로, 실록이 두 차례 편찬된 선조·현종·숙종·경종대의

은 기간의 실록에서 ‘書啓曰’을 검색해보면 출현빈도가 이 시기에 더욱 집중되는 것을 알 수 있다. 朝鮮王朝實錄에서 ‘以書啓曰’과 ‘馳書啓曰’을 제외하고 ‘書啓曰’로만 검색하면 총 439건이 보이는데, 그중 380건이 성종~선조 기간에 집중되어 있다. 따라서 조선전기의 實錄에 등장하는 書啓의 용례는 성종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성종 이전의 書啓는 대부분 국왕에게 ‘글 또는 문서로 아뢰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⁷⁾ 특히 세종 이후에는 그런 의미를 더욱 구체적으로 표현한 ‘以書啓曰’이나 ‘以書啓’의 형태로 기록된 사례가 다수 등장한다.⁸⁾ 이처럼 태종~예종까지의 실록에 보이는 書啓는 ‘글 또는 문서로 아뢰다.’의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이고 아직 독립적인 문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할 수 있다.

〈표 1〉 조선전기의 주요 實錄에서 검색한 ‘書啓’와 ‘書啓曰’의 출현 횟수

검색어	실록 전체	세종	세조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書啓	3,523	36	28	294	345	672	3	259	421
書啓曰	439	1	2	150	109	70	3	22	26

* ‘書啓曰’은 ‘以書啓曰’과 ‘馳書啓曰’을 제외한 수치임.

2) 성종대의 書啓

성종대에 이르러 書啓의 용례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성종실록』에서는

실록은 뒤에 편찬된 실록을 제외하였고, 『광해군일기』는 중초본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하에서 언급하는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한 수치도 모두 이와 같다.

- 7) 『태종실록』 권20, 10년 10월 29일 壬戌 “一, 紙之爲用廣矣。凡公私書啓、大小喪葬、莫不用之。”; 『세조실록』 권20, 6년 6월 25일 庚午 “一, 一等入格卷子, 本館書啓, 講讀優等者, 亦并啓達, 其中特異者, 啓聞陞職”; 『예종실록』 1년 3월 6일 庚寅 “自今公事入啓未下者, 十日一次書啓。”
- 8) 『세종실록』 권21, 5년 8월 9일 丁巳 “遠接使權軫遣喜平驛日守鄭玄, 以書啓曰”; 권21, 5년 8월 13일 辛酉 “平安道監司以書啓”; 권22, 5년 10월 2일 己酉 “初運押馬官金乙玄, 以書啓曰.” 실록에서 ‘以書啓曰’로 검색하면 총 23건이 보이는데, 이를 왕대별로 분류하면 세종 10건, 문종 3건, 세조 8건, 성종 1건, 중종 1건이다.

書啓의 내용이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기사가 총 218건 추출되었다.⁹⁾ 이 218건의 書啓를 올린 주체 및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성종실록』에 기록된 書啓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소계	총계
中央衙門이 올린 書啓	承政院	9	35
	弘文館	4	
	司憲府	2	
	成均館	1	
	禮曹	3	
	吏曹	1	
	觀象監	15	
京官이 올린 書啓	臺諫	50	141
	玉堂	40	
	承旨	7	
	議政·判書·提調·郎廳 등	44	
外官이 올린 書啓	觀察使	6	13
	節度使	4	
	守令	2	
	西北面都元帥	1	
王命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外交 문제로 파견	3	18
	敬差官으로 파견	5	
	賑恤·巡察을 위해 지방 파견	9	
	講武場에 파견	1	
기타 書啓	及第·生員	10	11
	琉球國王	1	
총 계			218

『성종실록』에 기록된 書啓는 우선 대부분 京官이 올렸다는 특징이 있다. 王命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신하도 京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書啓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京官이 작성해서 국왕에게 올린 것이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京

9) <표 1> 중 『성종실록』에서 '書啓曰'로 검색된 수치가 150건이라고 한 것은 단순 검색으로 얻은 수치이고, 여기에서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書啓의 수치가 218건이라고 한 것은 <표 1>의 '書啓曰'을 일일이 확인하여 동일한 기사에 여러 개의 書啓가 기록된 경우에는 각각 계산하였기 때문에 서로 수치가 달라진 것이다.

官 중에서도 侍從 또는 言官의 역할을 수행하던 玉堂, 臺諫, 承旨의 書啓가 97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까이 된다는 점이다.¹⁰⁾ 이는 국왕의 측근들이 국왕의 자문에 응하거나 국왕에게 諫言을 올릴 때 書啓를 사용하였음을 알려준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왕명을 받은 신하들이 왕명을 수행하던 도중이나 수행을 마치고 復命하였을 때 書啓를 올렸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후기 書啓의 특징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書啓의 유래를 엿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네 번째 특징으로는 中央衙門과 外官도 書啓를 올렸다는 점이다. 이것은 조선후기에 中央衙門이나 外官이 書啓를 올린 사례가 보이지 않는 것과는 다른 점이다.

문제는 이러한 書啓들이 독립적인 문서의 일종으로서 書啓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왕에게 말로 아뢰는 것이 아니라 ‘글 또는 문서로 작성해서 국왕에게 아뢰다.’라는 의미의 書啓인지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이것을 명확히 밝히기는 어려우나, 『성종실록』에 기록된 書啓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해보기로 한다.

첫째, 신하가 국왕에게 구두로 아뢴 것은 ‘來啓曰’이나 ‘啓曰’로 기록하고 문서로 아뢴 것은 ‘書啓曰’로 기록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¹¹⁾ 成宗 19년(1488)에 成宗이 任士洪을 등용하려고 하자 經筵에 入侍한 臺諫과 玉堂들이 반대하였는데, 領敦寧府事 尹壕와 兵曹判書 許琮은 任士洪을 등용해도 무방하다고 하여 成宗의 편을 들었다.¹²⁾ 이때 신하들이 구두로 아뢴 말은 모두 ‘啓曰’로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날 臺諫들이 尹壕와 許琮을 탄핵하였는데, 『성종실록』에 모두 ‘書啓曰’로 기록되어 있다.¹³⁾ 다시 이튿날 成宗이 臺諫들에게 탄핵이 불공정한 점을

10) 玉堂·臺諫·承旨의 書啓에 承政院·弘文館·司憲府의 書啓까지 합하면 모두 112건이 된다.

11) 實錄 전체를 ‘來啓’로 검색하면 총 4,957건이 추출되는데 그중 성종대에 검색된 것이 2,866건이고, ‘書啓+來啓’로 검색하면 총 110건이 추출되는데 그중 성종대에 검색된 것이 37건이다.

12) 『성종실록』 권222, 19년 11월 29일 戊子 “侍講官李承健啓曰: ‘臣等昨論士洪事, 御書曰, 必嫉士洪也。臣等與士洪本無私怨, 何嫉之有! 所以連疏極諫者, 誠以士洪小人不可用也。自古一小人進, 則衆小人類進而爲害大矣, 故臣等言之, 而殿下以爲必慎予也。臣等待罪經帷, 累蒙上恩, 無涓埃之報, 唯欲進君子退小人之心, 常奮激于中, 而不覺言之耳, 安有憤怨之心而然耶!’ 檢討官閔祥安啓曰: ‘小人進則君子退, 君子小人進退之機, 不可不慎也。’ 上顧問左右, 領事尹壕曰: ‘士洪, 功臣嫡長也, 用之何妨!’ 知事許琮曰: ‘士洪爲承旨時, 得罪情狀, 臣未詳知。然士洪爲功臣嫡長, 例當錄用, 則只敍於行職無權之地, 似亦無妨。’”

13) 『성종실록』 권222, 19년 11월 30일 己丑 “司憲府大司憲李則等、司諫院正言李自健等書啓

지적하자 臺諫들은 번갈아가며 이를 해명하고 任士洪 등을 탄핵하였다.¹⁴⁾ 이때 臺諫들이 꺾에 나아와서 구두로 아뢰었으며, 『성종실록』에는 그 내용을 ‘來啓曰’이나 ‘啓曰’로 기록하였다. 이처럼 신하들이 성종에게 구두로 아뢴 것은 ‘來啓曰’이나 ‘啓曰’로 기록하고 문서로 아뢴 것은 ‘書啓曰’로 기록하였다. 이것만으로는 아직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인지를 알 수는 없으나, 국왕에게 아뢴 때 구전으로 아뢰었는지 서면으로 아뢰었는지에 따라 구별하여 기록하였음을 알 수가 있다.

둘째, 특정한 문서를 2회 이상 기록할 때 ‘書啓’나 ‘書啓曰’로 기록한 점이다. 成宗 24년(1493)에 司諫 表沿沫이 筓子를 올려, 諫諍하다가 鞫問을 받게 된 臺諫을 鞫問하지 말고 諫言을 수용할 것을 청했으나 성종이 받아들이지 않자, 같은 날 다시 書啓를 올렸다.¹⁵⁾ 그리고 같은 해에 大司憲 許琛과 大司諫 許誠 등이 書啓를 올려 尹殷老와 李昌臣을 탄핵하였으나 성종이 수용하지 않자, 같은 날 다시 두 차례 上疏를 올렸다.¹⁶⁾ 表沿沫이 筓子 다음에 올린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로서의 書啓인지 筓子를 가리키는 것인지의 여부 및 許琛과 許誠 등이 上疏

曰:‘……昨日經筵, 殿下顧問左右之時, 尹壕不足責, 許琛亦爲士洪功臣嫡長, 敘軍職無害. 琛有經術、識事體, 物論以爲他日次輔三公者也. 琛豈不知用小人有關於宗社安危乎! 琛而如是, 將焉用彼!’”

14) 『성종실록』 권223, 19년 12월 1일 庚寅 “司憲府執義金楣等來啓曰:‘昨日傳教曰, 爾等亦有曲直, 而予不言之. 臣等聞命, 退而不寐, 反覆思之. 臣等待罪言官, 人主過失, 亦得言之, 若知同僚之有過, 其何饒之! 臣等之職, 以論人過失爲任, 而上教如此, 視然就職, 亦實未安.’ 傳曰:‘自古帝王, 隱惡揚善, 不敢言人之過, 故予初不言之. 今爾等以謂就職未安, 予當言之. 昨日, 李則與李自健等書啓, 其中有 ‘尹壕不足責’ 之語. ……若自健實爲正大而論尹壕之不足責, 則當歷舉某事某事爲不足責, 可也, 而不直言之, 其可謂正大乎! 昨日予所云爲此耳.’ 楣等啓曰:‘……’ 正言李自健啓曰:‘……’ 安瑠等亦啓曰:‘……’ 傳于金楣等曰:‘……’ 傳于瑠等曰:‘……’ 瑠等啓曰:‘……’ 金楣等啓曰:‘……’ 瑠等啓曰:‘……’ 傳于金楣等曰:‘……’ 傳于瑠等曰:‘……’ 安瑠、金楣等同辭啓曰:‘……’ 大司憲李則來啓曰:‘……’ 傳于李則曰:‘……’ 傳于臺諫曰:‘……’ 又傳曰:‘……’ 瑠等啓曰:‘……’ 李則啓曰:‘……’ 傳于瑠等曰:‘……’ 傳于李則曰:‘……’”

15) 『성종실록』 권281, 24년 8월 1일 癸亥 “司諫院司諫表沿沫上筓子曰:‘……伏願亟收成命, 勿推臺諫, 以開言路.’ 傳曰:‘齊宣王以羊易牛之事, 則以仁心而言也, 汲黯雖出守淮陽, 天子之臣能救正者, 豈特一汲黯而止哉! 若以謂能爲臺諫者, 成倪、鄭錫堅而已, 則其餘爲臺諫者, 非臺諫乎!’ 沿沫書啓曰:‘……’”

16) 『성종실록』 권281, 24년 8월 22일 甲申 “司憲府大司憲許琛等、司諫院大司諫許誠等書啓曰:‘……’ 不聽 臺諫更論啓, 不聽 又上疏曰:‘……’ 不聽 臺諫又上疏, 其略曰:‘……’”

를 올리기 전에 올린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로서의 書啓인지의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書啓가 아직 독립적인 문서가 되지 못하고 ‘글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다.’의 의미일 경우에는 위의 書啓가 筭子나 上疏를 가리킬 수도 있고, 그러한 문서와는 무관하게 별도의 종이에 기록하여 아뢰는 것일 수도 있다.

셋째, 臺諫이 구두로 論啓하다가 문서로 論啓하기 시작한 것이 성종 때부터라는 점이다. 즉 성종 때부터 臺諫의 口啓가 書啓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徐居正의 卒記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보인다.

임진년(1472, 성종3)에 서거정이 사헌부 대사헌으로 옮겨 제수되었다. 옛 관례에 따르면, 臺諫이 주상에게 아뢰는 사안은 승지가 中官에게 말로 전해주면 中官이 그 말대로 주상에게 아뢰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말이 누락될 우려가 더러 있었다. 서거정이 筭子의 사용을 청하여 <받아들여지자>, 주상에게 아뢰고 싶은 말을 모두 書啓할 수가 있어 아랫사람의 의사가 다 전달되었으므로 모두 편리하게 여겼다.¹⁷⁾

위의 기록을 통해서 臺諫이 구두로 論啓하다가 筭子로 論啓한 시점이 成宗 초기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筭子로 論啓하는 것을 ‘書啓하다’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아 書啓가 곧 筭子나 上疏로 아뢰는 것을 가리키는 의미로 볼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성종실록』에 기록된 대부분의 書啓가 臺諫, 玉堂, 承旨 등이 올린 문서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書啓는 上疏나 筭子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겠다. 실제로 『성종실록』과 『중종실록』에는 書啓를 筭子나 單子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보인다.¹⁸⁾ 그렇다고 이때의 모든 書啓가 上疏·筭子·單子 등의 특정 문서를 가리킨다는 뜻은 아니다. 일부 그렇게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당시에 출현하는 書啓의 대부분은 ‘글로 써서 아뢰다.’나 ‘글로 써서 아뢰는 문건’을 가리키고 특정한 문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다.

17) 『성종실록』 권223, 19년 12월 24일 癸丑 “壬辰, 遷司憲府大司憲。故事, 凡臺諫啓事者, 因承旨傳語, 中官轉達于上, 其間言語或有漏誤之患。居正請用筭子, 凡所言, 皆得書啓, 下情畢達, 皆以爲便。”

18) 『성종실록』 권146, 13년 9월 28일 癸亥 “大司憲魚世謙等書啓曰:‘……’ 御書答曰:‘……’若以此筭觀之, 則秋官反入於劾, 未副予意。卿等就職”; 『중종실록』 권42, 16년 6월 2일 壬午 “三公及兵曹堂上全數詣闕擇堪爲將帥者, 書啓曰:‘此單子, 宜留中不下, 自上斟酌’”

이상의 사례 분석을 통해 볼 때, 書啓가 아직은 독립적인 문서의 의미로 사용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상소나 차자 등의 특정 문서로 아뢰다.’의 의미로 사용되거나 특정 문서가 아닌 ‘글로 써서 아뢰다.’ 또는 ‘글로 써서 아뢰는 문건’의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일 왕명을 수행한 신하가 復命하여 결과를 보고할 때 書啓라는 독립적인 문서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그 유래가 성종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듯하다. 그리고 書啓가 당시에는 특정한 문서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었지만 ‘글로 써서 아뢰는 문건’의 의미로 사용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체가 문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그 문서가 후일 書啓라는 특정 문서로 발전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는 문서의 이름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소급해서 그 문서의 이름을 書啓라고 부르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수는 있겠다.

3) 연산군·중종대의 書啓

『연산군일기』에서 書啓가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사례를 ‘書啓曰’로 검색한 결과 총 139건이 추출되었다.¹⁹⁾ 이를 139건의 書啓를 올린 주체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표 3>과 같다.

<표 3>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書啓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소계	총계
中央衙門이 올린 書啓	承政院	2	18
	弘文館	11	
	司憲府	3	
	議政府	1	
	禮曹	1	
京官이 올린 書啓	臺諫	78	118
	玉堂	16	
	承旨	1	
	議政·判書 등	23	

19) ‘書啓曰’로 기록된 같은 날짜에 ‘曰’이 생략된 채 ‘書啓’로만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도 포함시켰다.

王命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外交 문제로 파견된 관원	2	5
	賑恤 등을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원	3	
기타 書啓	貢生-風水	1	1
총계			142

위의 표를 참고하면 『연산군일기』에 기록된 書啓의 특징은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다. 첫째는 外官이 올린 書啓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京官 중에서도 言官과 侍從의 역할을 담당한 臺諫, 玉堂, 承旨가 올린 書啓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특히 臺諫이 올린 書啓는 전체의 과반을 넘길 만큼 압도적으로 많은 점에 띤다. 나머지는 성종대와 유사한 흐름을 보여준다.

『중종실록』에서 書啓가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사례만을 ‘書啓曰’로 검색한 결과 총 77건이 추출되었다. 이 77건을 書啓를 올린 주체 및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중종실록』에 기록된 書啓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소계	총계
中央衙門이 올린 書啓	承政院	7	18
	司憲府	2	
	議政府	2	
	義禁府	4	
	禮曹	1	
	兵曹	2	
京官이 올린 書啓	臺諫	2	42
	玉堂	2	
	承旨	3	
	議政·判書 등	35	
外官이 올린 書啓	節度使	3	4
	守令	1	
王命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外交 문제로 파견된 관원	9	12
	敬差官으로 파견	1	
	御史로 파견	1	
	奉審을 위해 파견	1	
기타 書啓	蒙古國王	1	1
총 계			77

위의 표를 통해 書啓를 올린 주체가 대부분 京官이라는 사실은 성종 때와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성종 때와는 달리 臺諫, 玉堂, 承旨 등 侍從과 言官이 올린 書啓의 숫자가 확연히 줄어든 반면에 議政과 判書 등이 올린 書啓의 숫자는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 侍從과 言官이 書啓를 사용한 횟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중종 때부터 書啓를 대신하여 새로운 문서를 사용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중종의 재위기간이 39년이란 점을 감안할 때 書啓의 기록이 총 77건에 불과한 것은 성종 218건 및 연산군 142건과 비교해보면 상당히 줄어든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성종 때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書啓는 중종 때부터 여러 종류의 문서로 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표 1>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에서 검색된 ‘書啓’의 수치는 성종 294건, 연산군 345건, 중종 672건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나, ‘書啓曰’은 성종 150건, 연산군 109건, 중종 70건으로 중종 때 갑자기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書啓’를 ‘書啓曰’로 기록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기록하였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중종 때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書啓가 줄어든 첫 번째 원인은 書啓 중에서 啓辭가 독립적인 문서로 분화하였기 때문이었다. 즉 臺諫이 올리던 書啓가 啓辭라는 문서로 독립하였던 것이다.²⁰⁾ 그에 따라 『성종실록』 50건, 『연산군일기』 78건 등 다른 관원이 올린 書啓에 비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던 臺諫의 書啓가 『중종실록』에는 2건만 보이게 된 것이다.

두 번째 원인은 후일 草記라는 독립적인 문서로 분화하게 되는 ‘~意啓曰’이나 ‘~言啓曰’의 기록이 이때부터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草記의 서두는 草記를 올리는 官司名을 기록하고 이어서 ‘啓曰’을 기록하거나 草記를 올리는 관원의 職名을 기록하고 이어서 ‘~意啓曰’이나 ‘~言啓曰’로 시작한다.²¹⁾ 그런데 草記라

20) 『중종실록』 권40, 15년 7월 2일 戊子 “大司憲李沆、執義兪汝霖、掌令曹漢弼·尹止衡、持平朴<陸→陸>·蘇世良等啓曰:‘……’ 上曰:‘言多不能詳聽, 其令臺諫親啓.’ 【崔世節新拜承旨, 不慣於啓辭, 其於親啓, 言語艱澁難曉, 故上教如此】”; 권40, 15년 7월 15일 辛丑 “傳于政院曰:‘今日臺諫所啓, 得聞大綱, 而不能詳知. 自今而後, 臺諫之啓辭及辭免等事, 例令書啓. 若承旨親啓之日, 則不必爾也.’” < >는 필자가 校勘한 내용을 표시한 것으로, ‘→’는 誤字의 수정을 나타낸다. 啓辭의 성립 시점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0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37, 128-131면 참조. 臺諫이 啓辭로 論啓하기 시작한 시점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4 「臺諫 啓辭에 대한 고찰」 『고문서연구』 45, 116-117면 참조.

는 이름을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草記의 형식인 ‘~意啓曰’이나 ‘~言啓曰’의 형식으로 기록된 기사가 종종 때부터 대폭 증가한다. 선조~성종 사이의 실록에서 ‘意啓曰’과 ‘言啓曰’로 기록된 기사를 검색해보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표 5> 成宗~宣祖의 實錄에서 검색한 ‘書啓曰’, ‘意啓曰’, ‘言啓曰’의 횟수

검색어	실록 전체	성종	연산군	중종	인종	명종	선조
書啓曰	439	150	109	70	3	22	26
意啓曰	642	0	3	280	6	163	107
言啓曰	282	7	0	30	0	9	200

* ‘書啓曰’은 ‘以書啓曰’과 ‘馳書啓曰’을 제외한 수치이고, ‘言啓曰’은 ‘代言啓曰’을 제외한 수치임.

위의 표에 의하면, 성종대와 연산군대에는 ‘書啓曰’이 주를 이루고 ‘意啓曰’과 ‘言啓曰’은 거의 보이지 않다가, 중종대~선조대에는 ‘書啓曰’이 줄어들고 ‘意啓曰’과 ‘言啓曰’이 대폭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중종대에 대폭 증가한 ‘意啓曰’과 ‘言啓曰’을 곧바로 草記의 기록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중종대에 啓辭가 성립되면서 書啓의 분화가 시작되고 마침내 草記와 書啓의 분화 조짐을 보여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芝峯類說』과 『銀臺條例』에서 草記의 형식인 ‘아무개 承旨가 아무 관사의 아무 관원이 전한 말로 아뢰기를, ……」이라고 『승정원일기』에 기록하는 것은 옛 규정을 지키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草記가 성립되기 이전에도 이미 『승정원일기』에 ‘~意啓曰’과 ‘~言啓曰’로 기록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²²⁾

21) 『百憲摠要』「禮 66 用文字式 “京司草記式【大典云, 各司有緊急事, 提調直啓】: ‘某司啓曰, 某司官員以都提調意啓曰, 云云何如? 未端無年月日、官銜.’”; 『典律通補』別編 本朝文字式 “草記式【周帖】: ‘某【初帖初行平行。】司啓【二行。】曰【或郎廳以都提調意啓曰】, 云云何如?【一式, 云云之意, 敢啓。[二行]】’”; 『芝峯類說』卷17, 「雜事部」故實 “其後乃用草記, 舖張文字, 略如疏笥之爲。今『政院日記』書曰, ‘某承旨以某司某官言啓曰云云’, 蓋存舊規也”; 『銀臺條例』故事 “中宗朝, 命承旨請對啓事。仁宗朝, 大小公事, 凡官必親啓於閣外, 此規遂廢, 以言傳于承旨, 則注書翻以文字啓之 其後, 乃用草記, 如今某承旨以某司言啓曰云云, 蓋存舊規也。”

22) 『芝峯類說』卷17, 「雜事部」故實 “祖宗朝大小公事, 凡官必親啓於榻前 而中歲以來, 此規

議政과 判書 등이 올린 書啓의 내용은 國政과 관련된 고위 관료들의 의논 결과나 개인의 의견 등을 적어 올린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議政과 判書 등이 올린 書啓의 비중이 높아진 것도 그들이 書啓를 올린 횟수가 전보다 증가해서가 아니라 侍從과 言官이 올린 書啓의 비중이 낮아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높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종대에 議政과 判書 등이 올린 35건의 書啓는 성종대의 44건이나 연산군대의 23건에 비해 재위기간으로 따져볼 때 결코 증가한 것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4) 인종·명종대의 書啓

『인종실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書啓는 총 4건으로, 그중 승정원에서 올린 書啓가 1건이고, 議政, 贊成, 判書 등이 올린 書啓가 3건이다. 인종은 재위기간이 만 1년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왕대와 書啓의 특징을 비교하는 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명종대에 이르러서는 書啓의 용법에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다. 『명종실록』에서 書啓가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사례만을 ‘書啓曰’로 검색한 결과 총 18건이 추출되었다. <표 6>에 보이듯이 18건의 書啓 중 9건은 議政과 判書 등 고위관료들이 國政 현안에 대해 의논한 결과나 개인의 의견 등을 적어 올린 것이고, 나머지 9건은 왕명을 수행한 관원이 수행 결과를 적어서 올린 것이다. 왕명을 수행한 관원이 올린 9건의 書啓를 그 내용에 따라 분류해보면, 중국에 使臣으로 파견되었다가 돌아온 관원이나 通事 등이 올린 書啓가 5건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왕명을 다른 신하에게 전달하고 해당 신하의 의견을 기록해서 보고하는 書啓 1건, 평안도와 황해도 백성의 상황 등을 보고한 書啓 2건, 왕비의 명을 받은 中官 등이 開城府의 松岳山을 봉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는 書啓 1건이다.²³⁾

遂廢. 凡啓辭. 以言語傳于承旨. 則注書以文字書啓. 其後乃用草記. 舖張文字. 略如疏筭之爲. 今『政院日記』書曰. ‘某承旨以某司某官言啓曰云云’. 蓋存舊規也”; 『銀臺條例』「故事」 “中宗朝. 命承旨請對啓事. 仁宗朝. 大小公事. 凡官必親啓於閣外. 此規遂廢. 以言傳于承旨. 則注書翻以文字啓之. 其後. 乃用草記. 如今某承旨以某司言啓曰云云. 蓋存舊規也.”

23) 『명종실록』 권1, 즉위년 8월 30일 庚申 “假注書柳景深往議于順朋第. 順朋書啓曰.”; 권7, 3년 1월 12일 己丑 “獻納鄭宗榮來自平安道書啓曰”; 권11, 6년 4월 14일 壬申 “(咸鏡暗

〈표 6〉 『명종실록』에 기록된 書啓의 분류

대분류	소분류	소계	총계
京官이 올린 書啓	議政·贊成·判書 등	9	9
王命의 수행을 위해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外交 문제로 파견된 관원	5	9
	왕명 전달	1	
	민정 파악	2	
	지방 봉심	1	
총계			18

『명종실록』에 기록된 書啓의 특징으로는 3가지를 지적할 수가 있다. 첫째는 이전의 書啓들과는 달리 中央衙門에서 올린 書啓가 없고 개인의 이름으로 올린 書啓만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후일 개인의 이름으로 작성해서 올리는 문서가 書啓의 특징 중 하나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 둘째는 外官이 올린 書啓가 없다는 점이다. 이것도 후일 京官職과 權設職의 관원이 書啓를 올리고 外官職의 관원은 서계를 올리지 않는다는 점과도 일치한다. 셋째는 왕명을 수행한 관원 등이 올린 書啓가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많아졌다는 점이다. 후일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이 왕명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수행을 마치고 復命하여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서계를 사용하였고, 이것이 書啓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된다는 점에서 이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이상 3가지의 특징은 조선후기 書啓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으로, 명종 때에는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議政과 判書 등 고위관료들이 올린 9건의 書啓도 모두 명종 8년(1553) 이전에 출현한 것이고 그 이후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명종 중반 이후에는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로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

行御史)王希傑書啓, 留中不下, 政院請下史官記之。【其書啓曰……】”; 권18, 10년 1월 10일 丙午“(通事崔)世協書啓曰”; 권23, 12년 11월 6일 乙卯“(奏請使)趙士秀書啓曰”; 권24, 13년 3월 6일 甲寅“傳于尹春年曰:‘一路之事, 悉書啓。’春年書啓曰”; 권32, 21년 1월 24일 丙辰“中宮殿承傳色趙連宗、內需司別坐朴評, 以內教往審開城府松岳山而還, 書啓曰”; 권33, 명종 21년 10월 13일 庚午“聖節使朴啓賢回自京師 傳曰:‘中原聞見之事, 一一書啓’ 啓賢書啓曰”; 권34, 22년 1월 16일 壬申“管押使李洪男復命, 仍書啓曰。” 인용문 중 ()안의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보충한 것이다.

된다. 명종의 재위기간에도 書啓를 單子나 啓辭라고 부르는 사례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한 書啓는 이전의 관행에 따라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다.²⁴⁾ 『명종실록』에 기록된 書啓의 총수가 18건에 불과한 것은 각 관사나 관원들이 중종~명종 때에 새로 성립된 啓辭·草記 등의 문서를 사용하고, 書啓는 왕명을 수행하는 관원들이 올리는 문서로 사용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생긴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하겠다.²⁵⁾

5) 선조·광해군대의 書啓

선조대에 이르면 書啓는 독립적인 문서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선조실록』에서 書啓가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사례만을 ‘書啓曰’로 검색한 결과 총 23건이 추출되었다. 이 23건의 書啓를 올린 주체에 따라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중국이나 일본에 使臣으로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4건²⁶⁾
- ② 중국에서 파견된 將帥를 접대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6건²⁷⁾

24) 다음 사례에서는 書啓를 啓辭 또는 單子라고 부르고 있다. 『명종실록』 권1, 즉위년 8월 25일 乙卯 “領議政尹仁鏡、右議政李芑、左贊成李彥迪、右參贊申光漢、吏曹判書林百齡、兵曹判書權檣、刑曹判書丁玉亨、禮曹判書尹漑、漢城府判尹尹思翼書啓曰：‘……’【時，彥迪方草啓辭，玉亨曰：‘上怒方極，毋爲過言以激之。’權檣曰：‘古有大臣叩頭流血之事，灌之將心，未可知之，時無形迹，豈至謀危宗社乎！大臣當以死爭之。辭遜，則自上必以爲懼而益不聽矣。’彥迪於啓辭，書‘柳灌等罪，雖非輕，豈有危宗社之念！’】”； 권5, 2년 5월 15일 乙丑 “(領府事洪)彥弼等書啓曰：【……及其議定，將書單子之際，連源出曰，大臣問其別議，故偶以臆意議之，然群議不然，請勿書啓。連源之議，果不書啓】’……”； 권32, 21년 1월 24일 丙辰 “中宮殿承傳色趙連宗、內需司別坐朴評，以內教往審開城府松岳山而還，書啓曰：‘……’傳曰：‘觀此單子，極爲駭愕。’”

25) 草記의 성립 시기에 대해서는 이강욱, 2009 《승정원일기》에 나타난 草記의 전면적 考察, 『민족문화』 34, 311-312면 참조. 필자는 상기 논문에서 빠르면 명종대, 늦어도 선조 초기에는 草記가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았다.

26) 『선조실록』 권7, 6년 3월 17일 丁酉 “尊號使李希儉，昨日入來書啓曰”； 권73, 29년 3월 17일 甲申 “譯官李億禮書啓曰”； 권126, 33년 6월 4일 乙亥 “謝恩使李好閔，以中朝聞事，書啓曰”； 권126, 33년 6월 9일 庚辰 “前佐郎姜沆，自日本逃還，以秘密書啓曰。”

27) 『선조실록』 권37, 26년 4월 9일 癸巳 “李提督差備通事金吉孫書啓曰。”； 권51, 27년 5월 6일 癸未 “檢閱金止胡參將處問安後，書啓曰”； 권53, 27년 7월 5일 辛巳 “左副承旨李德悅，以劉摠兵燕亨事往湖南入來，書啓曰。”； 권60, 28년 2월 15일 戊午 “陳遊擊接伴官李時

- ③ 지방에 御史로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6건²⁸⁾
- ④ 지방에 파견되거나 서울에서 온 관원이 정황에 대해 보고한 書啓 3건²⁹⁾
- ⑤ 다른 관원에게 파견된 관원이 올린 書啓 2건³⁰⁾
- ⑥ 都元帥의 從事官이 올린 書啓 1건³¹⁾
- ⑦ 司諫院이 올린 書啓 1건³²⁾

위의 書啓 중 유일하게 官司의 이름으로 올린 司諫院의 書啓는 그 내용으로 보나 시기적으로 보나 臺諫啓辭일 가능성이 높다. 나머지 22건 중 都元帥의 從事官이 올린 書啓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왕명을 받고 파견된 관원이 수행 결과를 보고하는 書啓이다. 이 시기에는 명종 때까지도 보였던 議政과 判書 등 고위 관료들이 국정에 대해 보고하는 내용의 書啓는 사라지고 왕명을 수행한 관원들이 보고하는 내용으로 작성된 書啓만이 나타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都元帥 및 그의 從事官은 常設職이 아니라 壬辰倭亂과 같은 비상사태를 만나 임시로 설치한 權設職이라는 점에서 從事官도 왕명을 받아 일시적으로 파견된 신하라고 할 수가 있다.

광해군 때에도 書啓는 왕명을 수행한 관원이 수행결과를 보고할 때 사용하였다. 『광해군일기』에 직접인용형식인 ‘書啓曰’로 기록된 書啓가 총 16건인데, 모두 왕명을 수행한 신하가 수행결과를 보고하는 내용이다. 16건이 모두 承旨, 玉堂,

-
- 發書啓曰 ”; 권108, 32년 1월 9일 庚寅 “上幸江上, 迎慰麻提督 提督接伴使李光庭先來書啓曰.”; 권178, 37년 9월 28일 乙亥 “命原任大臣李德馨設宴于遊擊. 德馨罷宴後書啓曰 ”
- 28) 『선조실록』 권102, 31년 7월 8일 辛卯 “(黃海、平安巡檢海運御史正言)李爾瞻書啓曰.”; 권180, 37년 10월 1일 丁未 “平安道御史申慄書啓曰 ”; 권180, 37년 10월 1일 丁未 “忠清道御史金鼎一書啓曰.”; 권180, 37년 10월 1일 丁未 “黃海道御史吳百齡書啓曰 ”; 권180, 37년 10월 1일 丁未 “江原道御史宋書啓曰 ”; 권180, 37년 10월 1일 丁未 “咸鏡道御史元虎智書啓曰 ”
- 29) 『선조실록』 권42, 26년 9월 2일 癸丑 “大司憲金應南【自京城來。】書啓曰.”; 권42, 26년 9월 6일 丁巳 “右承旨鄭姬藩【自京城來。】書啓曰 ”; 권102, 31년 7월 30일 癸丑 “宣傳官蘇文震書啓曰.”
- 30) 『선조실록』 권15, 14년 1월 23일 戊子 “洪暹看病內醫書啓曰 ”; 권51, 27년 5월 5일 壬午 “宣傳官元宗義齋有旨往都元帥處回還, 書啓曰.”
- 31) 『선조실록』 권64, 28년 6월 6일 丁未 “都元帥從事官崔尙重書啓曰 ”
- 32) 『선조실록』 권106, 31년 11월 19일 庚子 “司諫院書啓曰.”

注書, 史官이 왕명을 받아 議政에게 傳諭한 뒤에 議政의 답변을 書啓에 기록하여 보고하는 내용이다.³³⁾ 이처럼 傳諭한 결과를 보고하는 書啓는 御史가 올리는 書啓와 함께 조선후기 書啓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이상으로 조선전기의 實錄에 수록된 書啓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왕대별로 書啓를 올린 주체가 변화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왕명을 수행한 신하가 올린 書啓만 나타나기 시작하는 명종 중기 이후부터는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3. 書啓의 형식

1) 法典과 史料 등에 나타난 書啓의 형식

조선시대의 法典 중에서는 영조대에 간행된 『續大典』에서 처음으로 書啓라는 어휘가 3건 보이고, 이어 정조대에 편찬된 『大典通編』에서도 2건이 보인다.³⁴⁾ 그 중 『續大典』 「刑典」 推斷에 보이는 ‘御史書啓’ 1건만 문서명으로 쓰인 것이고 나머지는 모두 ‘書啓하다.’라는 술어로 사용되었다.³⁵⁾ 이는 조선후기에도 書啓가 문

33) 왕명을 받은 관원이 다른 관원에게 傳諭하고 나서 올리는 書啓에는 해당 관원의 답변을 함께 기록하여 보고하였는데, 이것을 附奏라고 하였다.

34) 『續大典』 禮典 獎勸 “通訓以下文臣文學特異者, 令大提學抄啓賜暇, 湖堂讀書【……】, 或特命考講, 或命題製述, 第其高下, 每朔季, 各其名下, 懸錄書啓.”; 『續大典』 兵典 禁火 “瓦家三間以上, 草家五間以上失火者, 自人定至罷漏, 登時書啓。【人物致傷, 則雖一間, 亦爲書啓】”; 『續大典』 刑典 推斷 “御史書啓貪贓被論者, 觀察使親按啓聞, 勿委查官.”; 『大典通編』 「禮典」 獎勸 “試製, 則被選人全數入參; 試講, 則本閣書啓, 只受點人應試.”; 『大典通編』 兵典 試取 射講 “各營射講計畫通一年居首者, 歲末別單書啓 ”

35) 위의 5가지 사례는 정조대에 편찬된 『典律通補』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게 실려 있다. 『典律通補』 「禮典」 獎勸 “湖堂文臣, 令大提學抄文學特異者, 賜暇湖堂讀書, 六朔相遞, 毋差基諫, 劇務, 或命考講, 或命題製述, 第其高下, 每朔季書啓 ……講, 則本閣書啓, 只受點人參; 製, 則被選人全數參.”; 『典律通補』 「兵典」 試取 “各營射講計畫, 通一年居首者, 歲末別單書啓, 其餘賞罰, 有節目.”; 『典律通補』 「兵典」 禁火 “瓦家三間, 草家五間以上失火者, 自人定至罷漏, 登時書啓。【人物致傷, 雖一間, 亦啓。『續』】”; 『典律通補』 「刑典」 推斷 “御史書啓貪贓被論者, 觀察使親按, 勿委查官。”

서로서의 의미 이외에 ‘글로 써서 아뢰다.’의 의미로도 여전히 사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의 官司와 신하들이 사용하는 주요 문서에 대해서는 『경국대전』과 『전율통보』 등의 법전에 文書式이 규정되어 있어서 문서형식을 알 수 있다. 그러나 書啓에 대해서는 『경국대전』과 『전율통보』는 물론 다른 법전이나 官署志 등에서도 문서식을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은대편고』 등에 書啓의 형식과 관련된 단편적인 규정들이 실려 있어서, 그나마 書啓의 형식을 어느 정도 추정해볼 수는 있을 듯하다. 우선 書啓와 狀啓의 사용 범위 및 문서형식상의 차이를 알 수 있는 규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階來의 명을 받고 나간 관원이 보고하는 附奏는 五部の 안에서 올리면 書啓로 올리고 지방에서 올리면 狀啓로 올린다.【書啓는 單銜을 적고, 狀啓는 長銜을 적는다.】
○ 階來의 명을 받고 나간 承旨가 올리는 書啓는 注書가 정서하고, 狀啓는 陪行한 營吏가 쓰며, 卿宰가 올리는 書啓는 각각 그 관사에서 써서 바친다. ○ 階來의 명을 받고 나간 承旨나 假注書가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遞職되었다라도 규례대로 前職의 職銜으로 狀啓를 올린다.³⁶⁾

위에서는 서계와 장계의 사용법 및 작성상의 차이를 확인할 수가 있다. 즉 大臣이나 山林 등에게 국왕의 뜻을 전달하고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받고서 나간 관원이 漢城府의 관할 지역 안에서 附奏를 올릴 때는 서계를 사용하되 서계에는 單銜을 적고, 한성부의 관할 지역을 벗어난 지방에서 附奏를 올릴 때는 장계를 사용하되 장계에는 長銜을 적는다는 것이다.³⁷⁾ 서계와 장계의 문서형식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법전에 규정된 狀啓式과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전율통보』에 규정된 狀啓式을 살펴보기로 한다.

36) 『銀臺便攷』 「吏房攷」 階來 “凡階來附奏, 部字內則書啓, 外方則狀啓。【書啓則短啣, 狀啓則長啣。】 ○ 階來承旨書啓, 則堂后正書, 狀啓, 則陪行營吏書之, 卿宰書啓, 則各其司書呈。 ○ 階來承旨、假注書, 雖遞職, 依例以前職啣狀啓 ”

37) 이러한 규정은 고종 때에 편찬된 『銀臺條例』와 『六典條例』에서도 확인된다. 『銀臺條例』 吏攷 階來 “附奏, 部內則書啓, 外道則狀聞 ”;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階來附奏, 部內則書啓, 外方則狀啓。”

장계를 작성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다.【周帖으로 만든다. ○ 겉면의 오른쪽에 ‘承政院開拆’이라 쓰되 ‘院’자와 ‘開’자의 사이를 띄우고, 겉면의 종이 끝이 맞는 곳에 작은 글씨로 ‘臣’자를 쓰고 署名한 뒤에 칸을 띄워서 ‘謹封’이라 쓰며, 종이를 이어 붙인 경우에는 그 뒷면에 작은 글씨로 ‘臣’자를 쓰고 서명한다. ○ 東宮에게 올리는 狀達도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되, ‘善啓’는 ‘善達’이라고 쓴다.】: 두 번째 帖 끝줄의 平行보다 아래쪽에 資級과 職銜을 모두 쓰며, 작은 글씨로 ‘臣’자를 쓰고 姓을 쓴 뒤에 서명한다. 줄을 바꾸어서 平行에 본론을 ‘……’라 작성하고 그 뒤에 ‘~하는 일’이므로【爲白臥乎事是良尒】 또는 ‘~하기 위하여【爲白只爲】’라 쓴다. 이어서 ‘차례대로【詮次】’라 쓰고 줄을 바꾸어서 2항에 ‘잘 아뢰어주실 일입니다【善啓向教是事】’라고 쓴다. 다시 줄을 바꾸어 平行에 年號와 年 및 월일을 쓴다.³⁸⁾

위에서 狀啓의 序頭에는 장계를 올리는 관원의 資級과 職銜을 모두 쓴다고 하였다. 『은대편고』에서 서계에는 單銜을 쓴다고 했던 것은 장계의 문서식에서 ‘資級과 職銜을 모두 쓴다.’라고 한 것을 資級은 쓰지 않고 職銜을 제외한 職銜만 쓴다는 의미였다. 즉 장계에는 서두 부분에 작성자의 신분을 밝힐 때 자급과 직함을 모두 열거하지만, 서계에는 職銜을 제외한 직함만 쓰고 자급은 적지 않는다는 것이다.³⁹⁾ 서계에 작성자의 單銜만을 적도록 한 규정은 『은대편고』의 다른 곳에서도 다시 확인할 수가 있다. 경기감사는 봄과 가을에 道內를 巡行하면서 도내에 있는 각 陵園墓를 奉審하였는데, 경기감사가 순행을 중지한 경우에는 승지가 대신 행하거나 도내의 수령 중 승지를 지냈던 사람이 대신 행하도록 하였

38) 『典律通補』 別編, 狀啓式 “狀啓式【周帖. ○ 外面右邊, 書承政院開[間字.]拆, 合襟處, 臣署名謹[間字.]封, 連幅後面, 臣署名 ○ 東宮狀達同, 而善啓稱善達】: 具【再帖末行平行低字.】銜臣姓署名 某【平行.】事云云爲白臥乎事是良尒【或爲白只爲】, 詮次善【二行】啓向教是事. 年【平行.】號幾年某月某日.” ‘詮次’는 일반적으로 ‘연유’나 ‘까닭’ 등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百憲摠要』의 狀啓式과 실제 장계에는 본론 結辭의 ‘詮次’ 앞부분에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尒’이라 적고 있고, 告目的 結辭에는 ‘伏望緣由詮次告課爲白臥乎事’ 등으로 적고 있어서 ‘詮次’를 ‘연유’나 ‘까닭’ 등으로 해석할 경우에는 중복이 되고 문맥도 통하지 않는다. 따라서 ‘詮次’의 자전적 의미 중 ‘차례대로’나 ‘조리 있게’라는 의미로 해석하였다. 『百憲摠要』 「狀啓式」 “回捲 皮封始面, 書承政院開拆, 下端合襟處, 臣銜謹封 內面初行當中, 具加資職臣姓名某着銜, 本月【平行.】云云, 令該司稟處爲白乎尒, 緣由馳啓爲白臥乎事, 詮次善【平行.】啓向教是事. 大年號月日.”

39) 위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현재 남아있는 傳諭書啓의 정보는 서두를 기록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기록하되 본론의 말미에 單銜과 ‘臣’자 및 姓名을 기록하였다. 다만 御史書啓 초본의 서두에는 單銜이나 長銜 및 姓이나 姓名을 기록하였다.

다.⁴⁰⁾ 이때 도내의 수령 중 승지를 지냈던 사람이 대신 봉심하고 서계를 올릴 경우에는 서계에 ‘前 승지인 아무 주 목사[某州牧使]가 급히 서계합니다.’라고 직함만 적도록 하였다.⁴¹⁾ 여기에서도 資級은 적지 않고 職銜만 적도록 한 것이다. 다만 『百憲摠要』의 狀啓式에는 서계 작성자의 姓만 쓰지 않고 姓名을 모두 적는다고 하였고, 현재 남아있는 御史書啓의 草本과 謄錄에도 대부분 성명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⁴²⁾ 『중종실록』에는 刑曹가 올리는 書啓의 서두에 ‘어느 관사에서 무슨 일에 관한 공문으로 인하여 구속하는 일에 대해 아뢰입니다[自某司因某事移文囚禁事].’라고 쓴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書啓의 형식이 확립되기 이전의 일로 보이고, 조선후기의 서계 형식과도 큰 차이가 있어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였다.⁴³⁾

다음으로 서계의 본론을 작성하는 방식도 장계의 형식과 비교해보기로 하겠다. 본론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하였으므로 서계나 장계를 막론하고 각각 본론의 시작 부분은 일정하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서계 본론의 結辭를 장계와 같이 작성하였는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보이는 書啓 중 狀啓 結辭의 套式語가 사용된 사례가 있는지를 검색해보았다. 그 결과 아래의 사례처럼 서계의 말미에 장계와 같이 투식어가 기록되어 있는 경우가 있었다.

假注書 南泰溫이 서계를 올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신이 명을 받고서 의정부 좌참찬 鄭齊斗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집에 급히 달려가니 …… 신이 정제두와 함께 들어오라는 명을 받았으니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뜻을 차례대로 잘 아뢰어주실 일입니다.⁴⁴⁾

40) 『銀臺便攷』 「禮房攷」 奉審 “畿伯停巡時，各陵園墓奉審，承旨代行奉審，【何承旨進去啓辭爲之】 或道內守令中曾經承旨人代行，守令中如無曾經承旨，則秩高守令中假承旨差下，分詣奉審。【書啓，亦前承旨某州牧使馳啓云云】”

41) 위와 같음.

42) 書啓의 草本과 謄錄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百憲摠要』의 狀啓式은 주) 38 참조.

43) 『중종실록』 권95, 36년 5월 8일 癸巳 “領議政尹殷輔、左議政洪彥弼、右議政尹仁鏡詣賓廳啓曰：‘……囚獄者雖少，保授鎖匠者必多，而其侵虐之慘，果甚於囚者。勿令保授，而如有犯法者，刑曹書啓【謂自某司因某事移文囚禁事，書以】啓，則自可止矣’”

44) 『승정원일기』 영조 4년 11월 21일 “假注書南泰溫書啓曰：‘臣承命馳往于議政府左參贊鄭齊

위 서계의 본론 結辭에는 장계의 본론 結辭에 사용하는 투식어인 ‘詮次善啓爲白臥乎事’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서계의 말미에 ‘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詮次善啓向教是事’나 ‘詮次善啓’ 등의 투식어를 사용한 사례가 보인다.⁴⁵⁾ 다만 이상의 서계들은 모두 한성부의 관할지역을 벗어난 지역에서 올린 서계이기 때문에 『은대편고』의 규정을 적용한다면 원래 장계로 올려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서계의 본론 결사에 장계의 투식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래 서계의 형식인지 아니면 『일성록』에 수록하는 과정에서 장계를 서계로 수록한 것인지는 단정할 수가 없다. 『일성록』에는 다수의 傳諭書啓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지방에서 올린 서계가 다수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일성록』에 실린 승지 趙尙鎮의 서계에 대한 정조의 批答 중 서계의 작성과 관련된 기사가 보인다.

이번에 두 承旨가 올린 書啓를 보면, 吏讀는 書啓의 격식을 따랐으나 結語는 啓辭의 규정을 따랐다. 문서를 출납하는 곳에서 이처럼 잘못을 저질렀으니 어떻게 각 관사를 살펴 단속하겠는가! 해당 승지를 모두 무거운 쪽으로 推考하라.⁴⁶⁾

정조의 말로 볼 때 趙尙鎮이 書啓에 吏讀를 사용한 것은 타당하지만 啓辭의 형식처럼 結辭를 작성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啓辭의 結辭는 국왕에게 보고하는 내용이면 ‘敢啓’, 요청하는 내용이면 ‘何如’, 여쭙는 내용이면 ‘何以爲之’나 ‘敢稟’ 등으로 작성하였다.⁴⁷⁾ 『일성록』에 실린 趙尙鎮의 書啓에는 吏讀가 기록되어 있지 않고 結辭도 완전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승정원일기』에 실린 趙尙鎮의 서계에는 吏讀가 기록되어 있고, 結辭는 ‘감히 아뢰니다[敢啓].’라고

斗所住京第, ……臣既承僭來之命, 仍爲隨往之意, 詮次善啓爲白臥乎事 ”

45) 『승정원일기』 영조 3년 7월 19일 “左議政趙泰億處僭來承旨趙最壽書啓曰:‘……臣既承僭來之命, 姑爲仍留之意, 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 詮次善啓向教是事 ’”; 영조 5년 3월 7일 “崔宗周書啓曰:‘……臣既承僭來之命, 姑爲仍留之意, 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 詮次善啓向教是事 ’”; 영조 12년 3월 18일 “假注書李彝章書啓曰:‘……臣既承僭入之命, 仍留之意, 詮次善啓 ’”; 영조 28년 8월 27일 “兼春秋閱鎮龍書啓曰:‘……臣既承僭來之命, 姑爲仍留之意, 馳啓, 詮次善啓。’”

46) 『일성록』 정조 19년 10월 11일 “今番兩承宣書啓, 吏讀用書啓之體, 結語用啓辭之規 出納之地做錯若此, 何以察飭各司乎! 當該承宣, 竝從重推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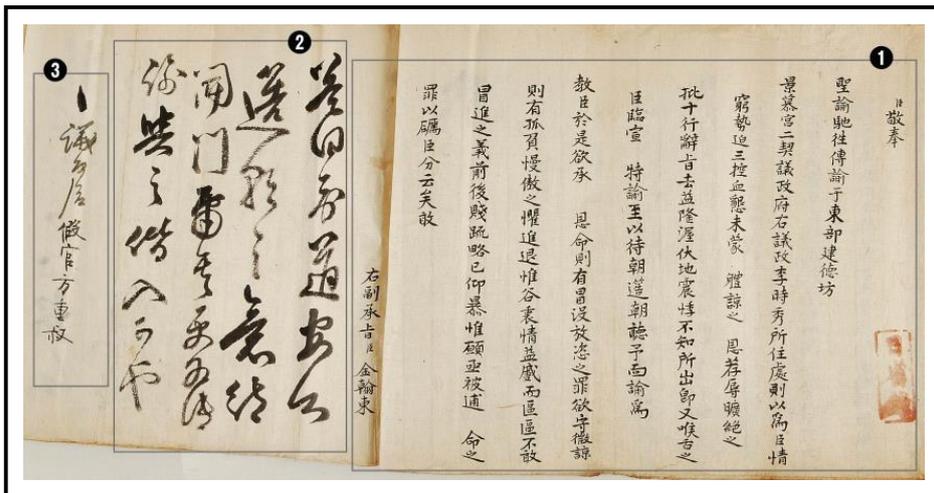
47) 이강욱, 2010 앞의 논문, 137-139면 참조.

기록되어 있다.⁴⁸⁾ 만약 서계 본론의 結辭도 장계처럼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한다면, 조상진이 書啓의 結辭를 狀啓의 結辭처럼 작성하지 않고 啓辭의 結辭처럼 ‘감히 아뢰입니다[敢啓].’라고 작성한 것을 두고 정조가 지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서계의 말미에도 장계의 말미처럼 年號와 연월일을 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서계의 문서식이 없는 데다 관찬사료에도 서계의 말미까지 수록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 이 부분은 아래에서 현재 남아 있는 文書와 謄錄 등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2) 文書와 謄錄 등에 나타난 書啓의 형식

이제 현재 남아있는 문서로서의 서계와 책자 형태로 만들어진 書啓謄錄 등을 통해 서계의 문서형식을 살펴보기로 한다. 현재 남아있는 서계의 정본은 1권을 확인하였다.



〈그림 1〉 金翰東의 傳諭書啓⁴⁹⁾

48) 『승정원일기』 정조 19년 10월 12일 “行都承旨趙尙鎮書啓:‘臣敬奉聖教馳詣西道各陵奉審之行, ……故茲以隨聞條列之意, 敢啓。’”

49) 한국학자료센터 영남권역센터(<http://yn.ugyo.net>), 한국국학진흥원 소장, 안동 하회 풍

〈그림 1〉에서 ❶이 원래의 서계이고, ❷는 서계에 대한 국왕의 비답을 기록한 것이며, ❸은 승정원이 비답의 내용을 전달해줄 관사명 및 승정원에 나아와서 비답을 전달받은 해당 관사 관원의 성명을 기록한 것이다. 그중 ❶의 서계는 右副承旨 金翰東이 右議政 李時秀에게 傳諭한 뒤 傳諭의 과정을 서술하고 李時秀의 답변인 附奏를 함께 작성해서 正祖에게 올린 書啓의 정본으로, 傳教軸에 묶여 있는 문서 중의 일부이다.⁵⁰⁾ ❷는 정조의 批答을 草書로 기록한 것으로, 우의정 李時秀에게 전달하기 위한 비답이 아니라 『승정원일기』에 수록하기 위해 서계의 말미 여백에 기록한 것이다. ❸에는 ❷의 비답 내용을 전달해줄 관사명은 草書로 ‘議政府’라 기록하고, 실제 승정원에 나아와서 비답의 내용을 전달받은 관원은 楷書로 ‘假官方重叔’이라고 기록하였다. 그중 ‘議政府’ 3자는 승정원에서 기록한 것이고, ‘假官方重叔’은 의정부의 관원인 方重叔이 승정원에 나아와서 비답 내용을 전달받고 직접 쓴 것이며, ‘議政府’ 위에 표시된 긴 점은 승정원에서 전달이 끝났음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에서는 金翰東이 작성한 서계를 중심으로 서계의 문서형식을 서두, 본론, 말미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겠다.

〈그림 1〉의 서계는 시작 부분에 서두를 기록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다. 앞부분의 여백에는 ‘日省錄’이라는 인장이 찍혀 있는데, 이것은 서계를 작성할 때 찍은 것이 아니라, 승정원에서 이 서계에 대한 정조의 비답을 받고 난 뒤 傳教軸으로 만들 때 이 서계를 『승정원일기』 뿐만 아니라 『日省錄』에도 수록하라는 표시로 찍어놓은 것이다. 실제로 〈그림 1〉의 서계와 비답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 정조 23년 4월 27일에 동일한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다.

〈그림 1〉 서계의 본론은 傳諭의 과정과 李時秀의 附奏로 구성되어 있다. 傳諭의 과정은 ‘신이 성상의 유지를 공경히 받들고서[臣敬奉聖諭]’로 시작하여 李時秀의 소재지에 가서 傳諭하였다라는 내용으로 서술되어 있다. 李時秀의 소재지는 ‘東部 建德坊 景慕宮二契’로 한성부의 관할지역이기 때문에 傳諭한 결과를 보고할 때 狀啓가 아닌 書啓를 올리는 지역이었다.⁵¹⁾ 李時秀의 附奏는 ‘以爲~云

산류씨 화경당, 1799년 4월 27일자 注書 柳台佐가 편철해 놓은 傳教軸에 포함되어 있는 자료이다. 이 자료는 논문심사위원의 제보로 신게 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50) 傳教軸에 대해서는 명경일, 2014 정조대 傳教軸을 통해 본 『承政院日記』의 문서 謄錄 체계 『고문서연구』 44, 77-115면 참조.

矣' 안에 인용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그 내용은 직무에 복귀하라는 명을 여러 차례 받았지만 나아갈 수 없는 입장이라는 것을 재차 밝히는 것이다. 본론은 金翰東이 李時秀의 附奏를 인용한 뒤 '감히 아뢰니다[敢啓].'로 마무리하고 있다.⁵²⁾ 이 서계의 본론 결사를 '감히 아뢰니다[敢啓].'로 마무리한 것은 정조가 서계의 본론 결사를 계사의 본론 결사처럼 작성하였다고 나무란 趙尙鑣의 서계와 같은 것이다.⁵³⁾ <그림 1>처럼 신하가 왕명을 받고서 전유한 뒤 傳諭의 과정과 당사자의 답변을 인용하여 작성한 서계의 형식은 『승정원일기』와 『일성록』에 빈번하게 보인다.

<그림 1> 서계의 말미에는 이 서계를 올린 관원의 직명과 성명을 '右副承旨臣 金翰東'으로 기록하였다. 이것은 서계에 작성자의 單銜과 姓名을 적는다는 규정과 일치하는 것이다.⁵⁴⁾ <그림 1>에는 서계의 말미 공간에 정조의 批答이 "알았다. 꺾문이 열리기를 기다려 그대가 '안심하고 조정에 나아오라.'라고 다시 傳諭하고 우의정과 함께 들어오라."라고 수록되어 있다. 이것은 정조가 서계를 올린 승지 金翰東에게 내린 비답으로, 우의정 李時秀에게 다시 傳諭할 내용과 傳諭할 시점을 지시한 것이다.

현재 정본으로 남아있는 서계로는 <그림 1> 하나만 확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서계의 문서형식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림 1>의 傳諭書啓에 의거하여 서계의 문서형식을 정리하면, 서계의 서두는 기록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기록하되 본론은 傳諭의 과정과 傳諭한 뒤 해당 관원의 답변인 附奏를 인용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말미에는 서계를 올리는 관원의 單銜과 성명을 기록하였다.

서계의 정본은 1건밖에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서계의 초본과 책자 형태로 만들어놓은 서계는 그나마 다수 남아있다. 현재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는

51) 『銀臺便攷』「吏房攷」條來 “凡偕來附奏, 部字內則書啓, 外方則狀啓。【書啓則短啣, 狀啓則長啣。】”

52) <그림 1>에는 서계의 마지막 글자인 '啓' 자가 보이지 않으나 접힌 부분에 가려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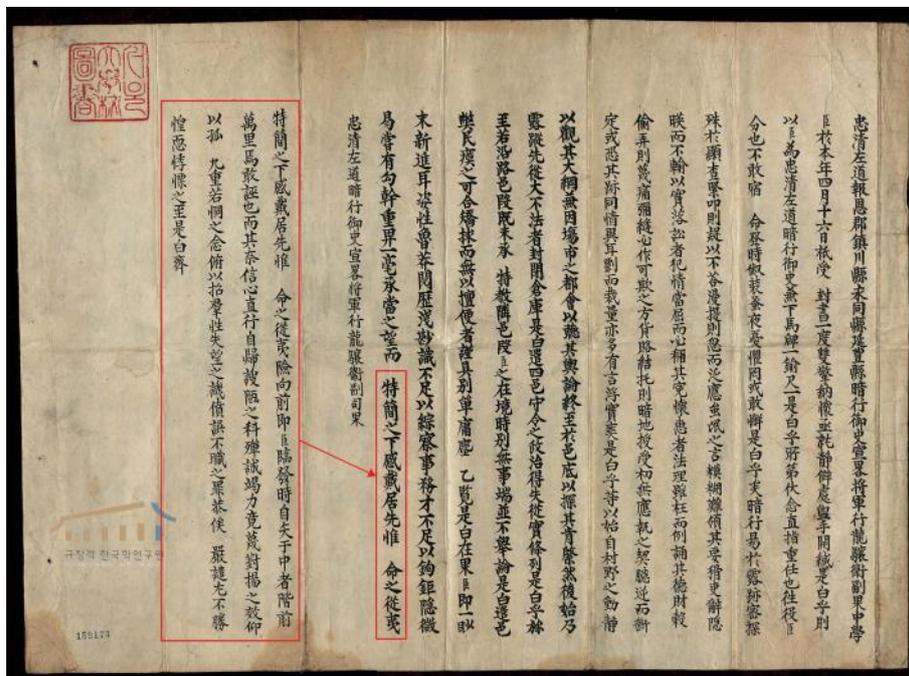
53) 주) 46 참조.

54) 주) 51 참조.

3건의 書啓 초본이 소장되어 있다. 그중 1건은 앞부분이 훼손되었으므로 제외하고, 나머지 2건은 <그림 2> 및 <그림 3>과 같다.



<그림 2> 李萬教의 御史書啓⁵⁵⁾



<그림 3> 中學의 御史書啓⁵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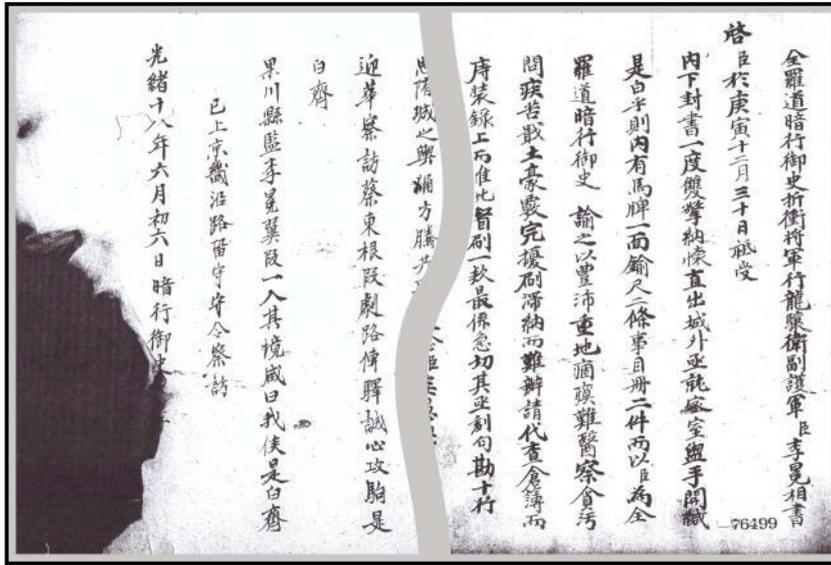
5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120778, 全羅左道暗行御史李萬教書啓·書啓草, 가로 687cm이고 세로 23cm이다. 서두에 기록된 '副果'는 '副司果'를 가리킨다.

〈그림 2〉는 서두에 ‘全羅左道暗行御史李萬教書啓’라 하여 單銜과 姓名을 적고 ‘書啓’임을 밝혔다. 본문에서는 임무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別單을 後錄하였으나, 별도의 結辭는 기록하지 않았다. 末尾에는 年號와 年 및 월일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림 2〉에는 吏讀가 섞여 있고, 草書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3〉은 서두에 ‘忠淸左道報恩郡鎭川縣永同縣延豐縣暗行御史宣畧將軍行龍驤衛副果中學’이라 하여 〈그림 2〉와는 달리 長銜과 姓名을 적고 ‘書啓’임을 밝히지 않았다. 본문에서는 임무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別單을 後錄하지 않고 별도로 작성하였다는 사실을 밝혔으나, 별도의 結辭는 기록하지 않았다. 末尾에는 年號와 年 및 월일을 기록하지 않고 ‘忠淸左道報恩郡鎭川縣永同縣延豐縣暗行御史宣畧將軍行龍驤衛副果’라 하여 長銜을 다시 기록하고 성명은 기록하지 않았다. 〈그림 2〉의 서계는 草書로 씌어져 있으나, 〈그림 3〉의 서계는 作帖하여 楷書로 작성한 점 및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정본을 작성하다가 실패한 문서로 보인다. 〈그림 3〉은 본문의 미완성 문장을 보완하여 末尾의 長銜 왼쪽에 기록해놓았는데, 이 書啓가 완전한 정본이 되려면 보완한 문장을 화살표와 같이 末尾의 長銜 오른쪽으로 옮겨 기록해야 한다. 〈그림 3〉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 미완성이기는 하지만, 정본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보이며 御史書啓의 문서형식을 파악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그림 4〉는 책자로 만들어진 서계로 서두에 ‘全羅道暗行御史折衝將軍行龍驤衛副護軍臣李冕相書啓’라 하여 長銜과 姓名을 적고 ‘書啓’임을 밝혔다. 본문에서는 임무를 수행한 과정과 결과를 서술하고 別單을 後錄하였으나, 별도의 結辭는 기록하지 않았다. 末尾에는 ‘光緒十八年六月初六日暗行御史□□□’라 하여 年號와 年 및 월일, 權設職의 직함을 기록하고 있다. ‘□□□’ 부분의 내용은 결락되어 자세히 판독할 수가 없으나 일부 판독 가능한 글자의 형태로 보아 ‘臣 李’라고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5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159173, 忠淸左道暗行御史書啓·書啓草, 가로 58cm이고 세로 45cm이다.



〈그림 4〉 李冕相의 御史書啓⁵⁷⁾

李冕相의 書啓 말미와 마찬가지로 서계의 말미에 年號와 年 또는 干支, 월일, 單銜과 姓名 등을 기록한 사례는 책자 형태의 다른 서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宣傳官書啓草冊』(奎7871의 2)에 수록된 서계 초본 13건의 말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7〉 『宣傳官書啓草冊』(奎7871의 2)에 기록된 書啓 草본의 말미

번호	연호	간지/년 및 월일	長銜/單銜	臣+성명
①		甲戌十二月初六日	摘奸宣傳官	臣趙毅存
②		甲戌十二月初六日	摘奸宣傳官	臣李商球
③		乙亥十一月	效力副尉一番內禁衛兼宣傳官	臣孫綏遠
④		乙亥十一月初四日	效力副尉一番內禁衛兼宣傳官	臣孫綏遠
⑤	嘉慶	二十年十一月初八日	效力副尉一番內禁衛兼宣傳官	臣許幹
⑥	嘉慶	二十年十一月二十日	效力副尉一番內禁衛兼宣傳官	臣許幹
⑦		乙亥十二月二十三日	摘奸宣傳官	臣許幹

57)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e-kyujanggak.snu.ac.kr>), 규장각 소장 古5120-70, 湖南書啓草, 가로 24cm이고 세로 22.5cm의 46장으로 된 책자이다.

⑧		乙亥十二月二十三日	摘奸宣傳官	臣李奎東
⑨		乙亥十二月二十三日	效力副尉一番內禁衛兼宣傳官	臣孫綏遠
⑩		乙未十一月十八日	摘奸宣傳官	臣趙義麟
⑪		乙未十一月十八日	摘奸宣傳官	臣李膺祖
⑫	道光	二十二年正月二十一日	宣傳官	臣許煜
⑬	道光	二十二年正月二十二日	宣傳官	臣許煜

〈표 7〉에서 ③~⑥과 ⑨는 말미에 長銜을 적고 나머지는 모두 單銜을 적었으나, 『은대편고』의 규정에 따른다면 單銜을 적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이 소장하고 있는 『別軍職書啓草冊』(奎7871의 1)에 수록된 서계 초본 4건의 말미도 이상과 유사하게 작성되었다.⁵⁸⁾ 〈표 7〉의 서계 초본 중 ③~⑥과 ⑬은 본론의 結辭를 ‘緣由并以馳啓爲白臥乎事’로 작성하였고, ⑫는 ‘緣由馳啓爲白臥乎事是良尠詮次善啓向教是事’로 작성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별도의 結辭가 없이 ‘是白齊’로 마무리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살펴본 『승정원 일기』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서계 본론의 結辭를 장계 본론의 結辭와 동일하게 작성한 경우이다. 〈표 7〉의 사례는 문서를 베껴놓은 것이기는 하지만, 單銜이나 長銜 아래에 ‘臣’ 자를 쓴 점 등으로 볼 때 원래 서계의 본론 結辭와 말미를 그대로 옮겨 적은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御史書啓의 문서형식과 비교하기 위해서 살펴본 宣傳官과 別軍職의 書啓草冊은 宣傳官과 別軍職이 국왕의 명을 받고서 奉審하거나 摘奸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한 서계를 모아 책자 형태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즉 선전관과 별군직의 奉審摘奸書啓를 모아놓은 책자가 『宣傳官書啓草冊』과 『別軍職書啓草冊』이다. 承旨나 史官 등이 국왕의 명을 다른 관원에게 전달한 뒤 당사자의 답변을 위주로 보고하는 傳諭書啓와는 달리 奉審摘奸書啓는 왕명을 받은 관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자신의 견해를 위주로 작성한다는 점에서 御史書啓와 공

58) 『別軍職書啓草冊』(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소장, 奎7871의 1)에 기록된 書啓草本 4건의 말미는 다음과 같았다. ① ‘癸酉九月初六日別軍職臣沈遠澤’ ② ‘癸酉九月初七日別軍職臣許雍’ ③ ‘奉審摘奸別軍職臣梁柱顯’ ④ ‘奉審摘奸別軍職臣李奎大’

통점이 있다. 아직 御史書啓의 草本과 奉審摘奸書啓의 草冊만을 가지고 단정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두 가지 서계의 그러한 공통점이 서계의 문서형식에서도 유사한 형식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御史書啓와 奉審摘奸書啓는 狀啓의 문서형식과도 일정부분 유사한 형식을 띠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내용으로 볼 때 서계의 문서형식은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傳諭書啓와 御史書啓로 나누어 문서형식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傳諭書啓는 서두를 기록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기록하되, 본론에는 傳諭의 과정과 傳諭한 뒤 당사자의 답변인 附奏를 인용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말미에는 서계를 올리는 관원의 單銜과 姓名을 썼다. 御史書啓는 첫째, 서두에는 작성자의 單銜을 쓰고 姓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單銜 대신 長銜을 쓰기도 하고 姓名을 모두 쓰기도 하였다. 둘째, 본론에는 왕명을 받고 수행한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고 結辭에는 장계 본론의 結辭와 같이 투식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투식어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셋째, 서계의 말미에는 年號+年과 월 일 및 작성자의 단함과 성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年號+年 대신 干支를 쓰기도 하고 단함 대신 장함을 쓰기도 하였다.

서계는 서계를 올리는 관원이 직접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대신 작성하게 한 경우에는 당사자와 대신 작성한 자 모두 처벌을 받기도 하였다.⁵⁹⁾ 그러나 大臣에게 傳諭한 뒤에 올리는 서계는 전유한 관원이 초본을 승정원에 바치면 注書가 정서하여 올렸다.⁶⁰⁾ 관원이 서계를 바칠 때는 승정원을 경유하였으며, 승정원에서 국왕에게 서계를 바칠 때에는 司謁을 통해 入啓하였

59) 『銀臺便攷』 通攷 注書 “乙卯五月二十二日入侍時, 右承旨洪仁浩所啓: ‘奉命史官書啓, 事體至重, 所當重勸手書入啓, 而昨日農形摘奸史官吳泰曾, 書啓不爲手寫, 使事變假注書曹錫中替書以入, 事未前有. 合施重勸, 而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乎?’ 上曰: ‘雖甚駭然, 渠則今日登筵無隙, 衆所共知, 當該翰林爲先推考. 渠不自請, 豈有使之書之之理乎! 當該假注書曹錫中拿問處之, 可也.’ ”

60) 『승정원일기』 정조 3년 12월 28일 “文淳曰: ‘大臣書啓, 開東時入來, 而正書之際, 假注書朴錕, 謂以筆拙, 推諉他人, 至於累次催促, 而終不書納, 以致遲滯, 極涉駭然. 本院請推之外, 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乎?’ 上曰: ‘汰去, 可也.’ ”; 『銀臺便攷』 「吏房攷」 敦諭 “敦諭後無書啓, 則只入來復命, 有書啓, 則亦爲入來, 自堂后正書, 以司謁入啓.”

다.⁶¹⁾ 국왕이 서계를 啓下하면, 서계를 계하 받은 관사에서는 3일 안에 回啓해야 하였다.⁶²⁾

4. 書啓의 분류

조선후기의 자료 중 『日省錄』에는 書啓가 다수 실려 있다. 그중 正祖代 『일성록』에서는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書啓가 802건이 추출되었다. 아래에서는 이 802건을 書啓의 내용과 書啓를 올린 주체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傳諭書啓

傳諭書啓란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大臣과 山林 등에게 傳諭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이다. 傳諭란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敦諭, 別諭, 批答을 大臣이나 山林 등에게 전달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새로 임명된 議政에게 出仕를 권유할 때, 국왕의 질책이나 다른 관원의 탄핵을 받고 待罪 또는 辭職하려는 議政을 만류할 때, 재야의 山林을 초빙할 때에는 국왕이 측근인 承旨나 史官 등을 보내 정중히 권유하거나 만류하는 글을 전달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傳諭한 뒤에 해당 大臣이나 山林과 함께 들어오라는 국왕의 명을 받고서 나가는 관원을 직명에 따라 偕來承旨 또는 偕來史官이라고 불렀다. 이들 偕來承旨와 偕來史官은 국왕이 돌아오라고 명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못하고 해당 大

61) 『銀臺便攷』 通攷 通行事例 “乙酉二月十三日, 啓曰: ‘即伏見書啓下者, 或有不由本院直爲入徹者. 奏御文字, 何等嚴重, 而有此無前之舉, 萬萬駭然. 擅自捧入之當該中官, 所當重勘, 而本院請推之外無他可施之罰, 何以爲之? 敢稟.’ 傳曰: ‘廟宮所屬書啓, 或有不由政院入啓之時. 今番, 亦自內直捧爲教而入啓者, 請罪置之.’ ”; 『銀臺條例』 故事, “凡遣承旨敦諭與傳諭之書啓, 以司謁入啓.”;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啓稟 “大臣處, 命承旨敦諭, 則何承旨進去啓稟 【敦諭後, 無書啓, 則入來復命: 有書啓, 則入來後, 自堂后正書, 以司謁入啓.”

62) 『六典條例』 「兵典」 兵曹 政色 總例 “京外書啓及上言回啓, 毋過三日 【御史、賑恤、復薦、親年、武科回榜、五卒登科事】”

臣·山林의 곁을 떠나지도 못하였으며, 해당 관원이 시골로 내려갈 경우에는 함께 따라 내려가면서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였다.⁶³⁾ 承旨나 史官을 보내 傳諭하였는데도 해당 大臣이나 山林이 마음을 돌리지 않을 경우에는 劄書나 參判 등 卿宰를 보내 설득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承旨, 史官, 卿宰 등이 傳諭한 뒤에는 수행결과를 보고하였는데, 한성부의 관할지역 안에서 傳諭하고 보고할 경우에는 書啓로 보고하고 지방에서 傳諭하고 보고할 경우에는 狀啓로 보고하였다.⁶⁴⁾ 書啓를 작성할 때에는 해당 大臣이나 山林의 답변을 포함하여 작성하였는데, 이를 附奏라고 불렀다.

正祖代 『일성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총 802건의 書啓 중에서 傳諭書啓는 563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하였다. 563건의 傳諭書啓를 傳諭한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大臣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가 488건, 山林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가 44건, 奉朝賀에게 傳諭하고 올린 서계가 31건이다. 大臣은 현임과 전임을 포함한 것으로, 大臣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가 傳諭書啓의 86%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奉朝賀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 31건 중 9건은 洪國榮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이다. 洪國榮은 大臣을 지내지 않았으나, 정조 3년(1779)에 都承旨와 宿衛大將의 자리에서 물러난 뒤에 奉朝賀에 봉해졌다.⁶⁵⁾ 洪國榮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 9건 중 2건은 洪國榮을 奉朝賀에 봉하기

63) 『銀臺便攷』 吏房攷 偕來 “偕來承旨進去之後, 又雖有亞卿進去之命, 下教前, 偕來承旨不得徑自退歸。【丙午六月初七日, 飭教】○ 偕來承旨, 雖遞職, 無上來之命, 則無得徑自還京。【戊戌十一月初七日, 飭教。】○ 凡偕來承旨、卿宰, 與大臣同去就, 大臣若筮朝, 則雖無附奏, 以大臣既已造朝, 臣則先爲入來之意, 書啓 【大臣若自偕來所轉向他處, 則以隨往之意, 亦爲書啓。○ 大臣筮朝前或徑還, 亦爲入來肅拜。】”; 『승정원일기』 정조 7년 3월 1일 “李在學啓曰: ‘卽者禁府都事來言, 右議政金煜, 今方待命於金吾門外’云 係是大臣去就, 敢啓’ 傳曰: ‘知道 無論承旨、史官, 偕來事在大臣所, 則大臣去就, 例爲書啓, 仍以隨往之意措語, 而今番無此啓辭, 當該承旨, 從重推考。’”; 『일성록』 정조 23년 11월 3일 “(禮曹判書黃)昇源書啓以爲: ‘臣既承偕入之命, 而大臣今方轉尋鄉路, 臣亦隨往。’○ 昇源狀啓以爲: ‘大臣就中浪浦路發行, 故臣謹奉所下傳諭, 追至大臣所到路傍店舍傳諭, 而大臣今日平邱驛止宿, 明日轉向楊根地云。臣則仍爲隨往。’”

64) 『銀臺便攷』 『吏房攷』 偕來 “凡偕來附奏, 部字內則書啓, 外方則狀啓。”

65) 『정조실록』 권8, 3년 9월 28일 己酉 “吏曹參判俞彥鎬、吏曹參議李秉模, 稱洪國榮致仕, 義不欲開政付銜, 八違召牌, 屢飭不膺命。特遞彥鎬職, 特拜李普行爲吏曹參判 始以國榮付奉

하루 전날 前宿衛大將의 이름으로 傳諭하고 올린 것이지만, 함께 포함시켰다. 洪國榮을 제외한 나머지 奉朝賀는 모두 大臣을 지낸 사람들이므로 이들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 22건까지 포함하면 大臣에게 傳諭하고 올린 書啓는 총 510건이나 되어 傳諭書啓의 90%를 차지한다. 山林은 資級이나 職位보다는 학문적 업적과 도덕적 명망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제수된 관직이 낮아도 왕명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大臣과 동등한 대접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山林보다 상위의 관직에 있는 사람이 山林에게 傳諭하러 나가는 경우도 있었던 것이다. 종2품의 관원인 禮曹參判 沈頤之가 정3품인 祭酒 宋德相에게 傳諭한 예와 吏曹參判인 兪彥鎬가 자신보다 하위인 吏曹參議 金亮行에게 傳諭한 예가 그러한 경우라고 하겠다.⁶⁶⁾

傳諭의 임무를 수행하고 書啓를 작성해서 올린 관원을 살펴보면, 承旨가 199건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注書 180건, 史官 137건, 卿宰 41건 순이다. 단일 관직으로는 승지가 1위로 전체의 35%를 차지하지만, 注書까지 史官에 포함시킨다면 史官이 올린 書啓가 총 262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한다. 2품의 관원인 六曹의 判書와 參判, 漢城府의 判尹·左尹·右尹, 議政府의 參贊 등 卿宰가 傳諭하고 올린 書啓도 41건을 차지한다. 그 외에도 閣臣의 傳諭書啓 4건, 副司直의 傳諭書啓 2건이 보인다. 이처럼 傳諭의 임무는 대부분 국왕의 측근인 承旨, 注書, 史官, 閣臣 등이 담당하였고, 이들을 보내도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卿宰를 보내 설득하였던 것이다.⁶⁷⁾

朝賀。”

66) 『일성록』 정조 2년 11월 22일 “禮曹參判沈頤之以祭酒宋德相附奏馳啓。書啓以爲：‘臣依聖教傳諭于祭酒宋德相處’”； 정조 3년 8월 5일 “奉教徐龍輔、承旨徐有防、吏曹參判兪彥鎬以吏曹參議金亮行附奏啓 ……彥鎬書啓以爲：‘臣奉聖教傳諭于吏曹參議金亮行所住處，則以爲，又伏承亞卿偕來之命，萬萬震懍，職名遞改之前，不得冒膺。云矣。’”

67) 『銀臺便攷』 「吏房攷」 偕來 “大臣偕來，有正卿、亞卿、承旨進去之命，則本院以‘何正卿【或亞卿或承旨。】進去?’啓辭。”

〈표 8〉 傳諭書啓의 분류

傳諭의 대상	書啓의 작성자(傳諭의 담당자)						총계
	承旨	注書	史官	卿宰	閣臣	副司直	
大臣	186	148	114	37	1	2	488
山林	9	17	11	4	3	0	44
奉朝賀	4	15	12	0	0	0	31
총계	199	180	137	41	4	2	563

* 大臣은 현임 대신과 전임 대신을 포함하였으며, 尹塾 1건은 尹塾이 大臣을 지내지는 않았으나 輔國大夫 判中樞府事가 되었으므로 大臣에 포함시킴.

2) 奉審摘奸書啓

奉審摘奸書啓란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奉審하거나 摘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이다. 奉審은 陵園墓와 殿閣, 제사를 지낼 곳 등에 탈이 있는지의 여부 등을 살펴보는 것을 가리킨다. 각 陵의 莎草와 石物에 탈이 있거나 불이 났을 때, 비가 내려 宗廟·永寧殿·景慕宮에 탈이 있을 때, 祭享을 앞두고 있을 때 등에 관원을 보내 奉審하였다.⁶⁸⁾ 경기감사는 봄과 가을에 지역을 순찰할 때 각 陵園墓를 奉審하였는데, 순찰을 정지한 경우에는 承旨 또는 守令이 대신 奉審하고 그 결과를 書啓로 보고하였다.⁶⁹⁾ 摘奸은 民情·農事·災害·植木의 상황, 獻官의 齋戒, 科試의 진행, 入直·巡行의 상태 등을 점검하고 적발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원들이 卯時에서 酉時까지 근무시간을 잘 지키는지의 여부 및 각 官司의 관원이 제대로 入直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비변사의 관원과 別軍職 등이 摘奸하였다.⁷⁰⁾ 그 외에도 守門將이 闕門과 城門을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

68) 『銀臺便攷』 禮房攷 奉審 “各陵莎草、石物有頽處及陵上失火，則政府【時任有頽，原任進去。】及禮曹堂郎、觀象監·繕工監提調進去奉審 ……○ 廟殿宮，因雨有頽處，則該官員一邊入稟差備，又言送本院，而以司謁入稟【或因特教承旨進去奉審】”

69) 『銀臺便攷』 禮房攷 奉審 “畿伯停巡時，各陵園墓奉審，承旨代行奉審【何承旨進去啓辭爲之。】，或道內守令中曾經承旨人代行，守令中如無曾經承旨，則秩高守令中假承旨差下，分詣奉審【書啓，亦前承旨某州牧使馳啓云云】。”

70) 『銀臺便攷』 「吏房攷」 摘奸 “諸司官員，卯仕酉罷【日短時，辰仕酉罷。】○ 戶曹、宣惠廳、刑曹、漢城府【以上逐日】、兵曹、工曹、義禁府、司僕寺。【以上，每五日卯西仕。此是備邊司摘奸衙門，若夫承傳摘奸，不在此限。】○ 各司入直官摘奸時闕，則自本院罷職傳旨

부 및 獻官이 淸齋를 잘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摘奸하였다.⁷¹⁾ 西五陵으로 가는 길에 경유하는 蜂峴은 풍수지리상 敬陵의 靑龍에 해당된다고 하여 사람들의 통행을 금지하고, 해마다 봄과 가을에 史官이나 宣傳官을 보내 통행금지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摘奸하도록 하였다.⁷²⁾ 이처럼 摘奸한 뒤에는 그 결과를 書啓로 보고하였다. 奉審하거나 摘奸한 결과는 書啓로 보고하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국왕이 都城 밖으로 행차하던 중에 守宮承旨가 奉審 결과를 보고할 경우에는 狀啓로 보고하였다.⁷³⁾

正祖代 『일성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총 802건의 書啓 중에서 奉審摘奸書啓는 140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하였다. 140건의 奉審摘奸書啓를 奉審摘奸한 대상에 따라 분류하면, 陵園墓와 祭壇을 奉審하고 올린 書啓가 52건, 罹災民과 窮民을 摘奸하고 올린 書啓가 46건, 농사상황을 摘奸하고 올린 書啓가 18건, 都城內外와 四山을 奉審하고 올린 書啓가 15건, 지방의 民情을 摘奸하고 올린 書啓가 9건이다. 奉審摘奸하기 위해 파견된 관원으로는 承旨가 17건, 注書가 12건, 史官이 32건, 卿宰가 5건, 宣傳官이 56건, 獻官이 11건, 기타가 7건으로, 史官과 宣傳官 등 국왕의 측근이 주를 이루었다. 그중 기타는 繕工監提調가 1건, 副校理가 1건, 奉安閣兼令이 1건, 別軍職이 1건, 禁衛大將이 1건, 六曹의 郎廳이 2건이다.

捧入 ”: 『銀臺便攷』 「兵房攷」 別軍職 “每夜別軍職摘奸闕內各司, 有無頗直啓, 閣門入直別軍職摘奸時, 勿用標信, 以通符舉行。【癸卯八月初十日下教】”

71) 『銀臺便攷』 兵房攷 門禁 “各門承傳摘奸, 則注書進去 ○ 兵房承旨, 時時使書吏摘奸於各門, 隨其執頃之多少, 守門將, 或立庭, 或分付兵曹削仕, 或罰番 ”: 『銀臺便攷』 「通攷 月令 “社稷祈穀大祭。【攝行時, 傳香日, 用齋、淸齋、摘奸、有奉審, 承旨監祭, 監祭後入稟事, 同宗廟。】”

72) 『銀臺便攷』 禮房攷 奉審 “蜂峴禁路奉審之行, 亦必摘奸, 春秋一次式, 別遣史官或宣傳官摘奸, 每孟朔, 該房及承傳宣傳官微稟。”

73) 『銀臺便攷』 吏房攷 幸行 “己酉二月初十日, 傳曰: ‘還宮前, 凡有祭享, 守宮承旨傳香, 仍爲奉審摘奸後, 形止狀聞 ’”: 『銀臺便攷』 「禮房攷」 奉審 “幸行時, 若值祭享還宮在於奉審日子之後, 則守宮承旨馳詣奉審摘奸後, 仍爲狀聞 ” 이것은 狀啓와 書啓의 사용기준으로 삼았던 지역은 都城이 아니라 국왕의 소재지가 중심이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표 9〉 奉審摘奸書啓의 분류

奉審摘奸의 對象	書啓의 작성자(奉審摘奸의 담당자)							총계
	承旨	注書	史官	卿宰	宣傳官	獻官	기타	
陵園墓/祭壇	16	2	6	5	9	11	3	52
罹災民/窮民	0	2	10	0	32	0	2	46
農事狀況	1	3	6	0	8	0	0	18
都城內外/四山	0	5	5	0	3	0	2	15
外方民情	0	0	5	0	4	0	0	9
총계	17	12	32	5	56	11	7	140

3) 御史書啓

御史書啓란 국왕의 명을 받은 御史가 수행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이다. 御史는 왕명을 받아 暗行, 按覈, 慰諭, 監賑, 試才 등의 일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되던 관원으로, 堂下官일 경우에는 '御史'로 부르고 堂上官일 경우에는 '使'로 불렀다.⁷⁴⁾ 使를 포함한 御史들이 왕명을 수행하고 돌아오면 그 결과를 書啓와 別單으로 작성하여 보고하였으며, 書啓나 別單을 작성해서 바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御史를 처벌하였다.⁷⁵⁾ 御史가 왕명을 수행하던 도중에 부모의 상을 당하거나 수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사망하였더라도 書啓가 있을 경우에는 승정원에서 이를 왕에게 바쳤다.⁷⁶⁾ 국왕이 書啓를 啓下하면 啓下받은 관사에서는 書啓

74) 『六典條例』「吏典 議政府 總例 “暗行御史, 以堂下文臣, 無定數抄啓”; 『六典條例』「吏典 吏曹文選司 總例 “慰諭使【別遣承旨或道內秩高守令 ○ 武臣, 雖曾經承旨, 不得差下】, 按覈使【二品至堂上官。】, 監賑使【堂上官 ○ 堂下差下, 則御史。】, 試才御史【堂上官 ○ 已上, 勿拘銓官相避】。”

75) 『銀臺便攷』「吏房攷」御史 “御史復命時, 書啓、別單及事目冊、鑰尺、馬牌, 封同爲入啓, 有入侍之命, 則以暗行御史入侍書出 ……○ 京畿暗行御史金銑入來, 而只納書啓, 不呈別單, 各邑弊瘼及孝烈等事, 混錄於書啓中, 原書啓捧入, 當該御史推考事, 本院啓辭, 傳曰: ‘允’ 【壬戌六月初三日】 ○ 關西暗行御史洪秉喆來到關外, 謂有情勢, 不爲復命, 馬牌、鑰尺及事目冊, 使下吏替納, 書啓, 不爲修正以入, 本院, 以事未前有, 極爲可駭, 請重推’ 傳曰: ‘允’ 【乙丑十二月初五日】”; 『六典條例』 吏典 承政院 總例 “御史復命時, 書啓、別單及事目冊、鑰尺、馬牌, 同爲入啓 有入侍之命, 則以暗行御史入侍, 書出 ” 別單에 대해서는 이강욱, 2014 『『日省錄』別單의 형식 및 분류 『민족문화』 44, 121-177면 참조.

76) 『銀臺便攷』「吏房攷」御史 “慶尙道暗行御史尹命圭遭故, 有書啓捧入之命。【壬午八月初三

에 대해 3일 안에 回啓해야 하였다.⁷⁷⁾

正祖代 『일성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총 802건의 書啓 중에서 御史書啓는 54건으로, 전체의 7%를 차지하였다. 54건의 御史書啓를 物件목적에 따라 분류하면, 暗行이 41건으로 가장 많고, 慰諭가 6건, 按覈이 5건, 暗行兼慰諭가 1건, 宣慰兼査正이 1건이다. 御史가 物件된 지역에 따라 분류하면, 경기 20건, 충청도 9건, 전라도 6건, 경상도 8건, 강원도와 평안도 각 2건, 황해도·함경도·개성부 각 1건, 기타 4건이다. 그중 기타 4건은 兩西 1건, 兩南 1건, 湖西·關東 1건이다.

〈표 10〉 御史書啓의 분류

御史의 物件지	御史의 物件목적(御史의 호칭)					총계
	暗行	慰諭	按覈	暗行兼慰諭	宣慰兼査正	
京畿	18	1(喬桐)	1(平澤)			20
忠淸道	7	1	1			9
全羅道	5		1			6
慶尙道	6		1(昌原)		1(咸陽)	8
江原道		1(干城 등)		1(三陟 등)		2
黃海道		1				1
平安道	1		1			2
咸鏡道	1					1
開城府		1				1
기타	3	1(江村)				4
총계	41	6	5	1	1	54

4) 看病書啓

看病書啓란 국왕의 명을 받은 醫官이 신하의 병세를 살펴보거나 치료한 뒤 수행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이다. 議政이나 奉朝賀 등이 병을 앓고 있으면

日。】○ 壬午九月初五日, 傳曰:‘今聞海西繡衣到城外作故, 其所驚慘, 尤有甚於未竣事而在遠不淑者 特贈, 既有清北繡衣所被之典, 照此舉行 書啓, 應有修來者, 令政院捧入。’【黃海道御史洪勝圭身故時】”

77) 『六典條例』 「兵典」 兵曹 政色 總例 “京外書啓及上言回啓, 毋過三日 【御史、賑恤、復薦、親年、武科回榜、五卒登科事。】”

국왕이 醫官을 보내 병세를 살펴보고 약을 처방하여 치료하게 하되, 날마다 파견하기도 하고 2~3일 간격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⁷⁸⁾ 看病한 醫官은 상대의 病勢, 처방한 藥物, 상대 집안에서 전하는 말 등을 書啓로 작성하여 국왕에게 보고하였다.⁷⁹⁾

正祖代 『일성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총 802건의 書啓 중에서 看病書啓는 38건으로, 전체의 5%를 차지하였다. 38건 중 25건은 議政에게 파견된 醫官이 올린 書啓이고 나머지 13건은 奉朝賀에게 파견된 醫官이 올린 書啓이다. 奉朝賀 중 議政을 지내지 않은 洪國榮 1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奉朝賀도 모두 議政을 지낸 사람들이기 때문에 醫官이 올린 書啓는 사실상 議政을 看病하고 올린 書啓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5) 其他 書啓

正祖代 『일성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총 802건의 書啓 중에서 이상의 분류에 해당하지 않아 其他 書啓로 분류한 것은 7건으로, 전체의 1% 미만을 차지하였다. 其他 書啓 7건의 내용과 작성자를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書啓는 檢閱 金祖淳이 正祖의 명을 받고 成均館에 나아가서 大司成 閔鍾顯과 함께 捲堂 중인 儒生들을 설득하고 儒生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올린 서계이다.⁸⁰⁾

78) 『일성록』 정조 14년 2월 27일 “命領相家看病醫官間日往來 內醫李完白書啓略曰：‘領議政 金煜病症，今日更爲來審，則主家以爲『前後藥治，少無所效，今將停藥以觀動靜，而王人之逐日來往，實爲惶悚，罷歸之意，縷縷言及。云矣。』教以：‘自有商量之道，間日往來。’”； 정조 14년 3월 22일 “命判府事金煜家進去御醫問三日看病 因御醫看病書啓，教以：‘加送藥物，爾則退歸間三日看病書啓’ ○ 御醫李完白書啓略曰：‘藥料齋傳于判府事金煜處，則以爲『日前所下，既不得承領，則今此繼領，尤何敢冒受！』云，而不爲祗受。’教以：‘然則還爲持來，以前下藥物，更傳後退歸’”

79) 『일성록』 정조 4년 1월 22일 “醫官金光顯以奉朝賀洪國榮病症看審啓。書啓以爲：‘病症看審，則脈度與痰嗽，比昨一樣，所服湯藥，限十貼連用之意，言于主家，而主家以爲 今則諸症頗減，所餘咳嗽，日寒稍解，自可差愈。王人久留，心甚不安，今日撤去以安病心。云。臣不得已罷歸。’教以：‘仍留着實看病’”； 정조 8년 12월 23일 “御醫崔重珽以領敦寧鄭存謙看病啓 書啓以爲：‘領敦寧鄭存謙病症看審，則概是傷寒屢日失汗之致，主家方用桂枝湯，此藥極爲穩當矣。’教以：‘持藥物，不離看病’”

80) 『일성록』 정조 10년 12월 17일 “檢閱金祖淳書啓：‘臣敬奉聖旨，馳往津中，與大司成臣閔鍾

두 번째 書啓는 全羅道京試官으로 파견되었던 李冕膺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는 書啓이다.⁸¹⁾ 세 번째 書啓는 漢城府가 思悼世子の 묘를 楊州의 永祐園에서 水原의 顯隆園으로 옮길 때 경유하게 되는 名山과 大川을 보고하는 書啓이다.⁸²⁾ 네 번째와 다섯 번째 書啓는 承旨 李益運과 假注書 金履堽가 청나라에서 皇旨를 보낸 데 대해 謝恩하고 새로 즉위하는 황제에게 賀禮하기 위해 使臣을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 현임 대신과 전임 대신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고하는 書啓이다.⁸³⁾ 여섯 번째 書啓는 承旨 趙弘鎭이 正祖의 명을 받고 청나라 勅使를 문안한 뒤 勅使의 답변을 보고하는 書啓이다.⁸⁴⁾ 일곱 번째 書啓는 承旨 徐有聞이 祭物의 監捧을 지체한 경위에 대한 終獻官 金達淳의 답변을 보고하는 書啓이다.⁸⁵⁾ 7건의 기타 書啓 중 漢城府의 書啓 1건을 제외하면 모두 왕명을 받고 나간 관원이 수행결과를 보고하면서 올린 書啓이고, 書啓의 작성자는 漢城府를 제외하면 承旨, 注書, 史官, 京試官이다.

正祖代 『일성록』에는 수록되어 있지 않으나, 중국이나 일본에 使臣으로 파견

顯招致諸生, 多般勸入, 則諸生等以爲 臣等所遭罔測, 不得不相率出齋。乃者, 簪筆之臣傳宣批旨, 至有勸入之命, 臣等固當奉行之不暇 而第臣等情勢窮蹙, 不敢冒處於齋舍, 前後聖諭, 自歸於孤負之科, 只自惶隕俟譴。云矣 ”

- 81) 『일성록』 정조 15년 9월 16일 “全羅道京試官李冕膺書啓以爲: ‘還穀移轉, 依嶺南例, 集錢分給, 稅穀裝載船, 最遠邑, 先爲劃送。’ ”
- 82) 『일성록』 정조 13년 8월 11일 “漢城府進靸行所過名山大川書啓。書啓曰: ‘自舊園所至蠶島沿路所見山川, 清溪山、獻陵主山、三角山、木覓山、仁旺山、北岳、鉢里峯、鞍峴、宣陵主山、長福峴、沙近寺峴、香山、新村主山、冠岳山、車峴、立巖、鶴峯、南漢主山、楮子島、寒川、泥坪川、下浦川、箭串川 ’ ”
- 83) 『일성록』 정조 19년 11월 19일 “命賀使入去時各表稱謝與謝恩當否, 更問于時原任大臣 承旨李益運書啓以爲: ‘臣敬奉聖諭, 馳往問議于時原任大臣, 則領議政洪樂性以爲……’ ”; 정조 19년 11월 20일 “命使銜以謝恩兼進賀稱號而只謝恩於太上皇。仍命以奏代表 假注書金履堽書啓以爲: ‘臣謹奉聖諭, 馳往問議于時原任大臣, 則領議政洪樂性以爲……’ ”
- 84) 『일성록』 정조 24년 1월 26일 “遣承旨趙弘鎭勞問上副勅 弘鎭書啓以爲: ‘臣承命馳往館所問安, 則上勅以爲 治道坦夷, 乘輶安穩, 館舍精潔, 館膳佳美, 休息平善, 而又遣近侍, 有此存問, 不勝感謝’云 副勅以爲 既蒙厚待, 便穩休息, 而侵晨勞動之餘, 上候若何, 又遣近侍存問, 至此感謝無已’云矣 ”
- 85) 『일성록』 정조 24년 4월 10일 “承旨徐有聞書啓以爲: ‘臣敬奉聖教, 祭物監捧之過時委折查問, 則終獻官行護軍金達淳以爲『誤聽守僕輩平明進詣之說, 又因齋宿處所之稍遠, 以致監捧之差晚, 惶恐之極, 不知所達。云矣 ’ ”

된 관원도 使臣의 임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수행결과를 書啓로 보고하였다. 이런 書啓는 使行書啓라고 부를 수 있겠다. 조선이 중국에 파견하던 사신으로는 해마다 정기적으로 파견하던 冬至使, 正朝使, 聖節使, 千秋使가 있었고, 일이 생기면 비정기적으로 파견하던 謝恩使, 奏請使, 進賀使, 陳慰使, 進香使 등이 있었다.⁸⁶⁾ 청나라가 들어서면서 千秋使가 없어지고 歲幣使가 생겼다가, 冬至使, 正朝使, 聖節使, 歲幣使를 하나로 합쳐서 冬至使라 부르고 1년에 한 차례만 파견하게 되었으며, 나머지 비정기적으로 파견하던 使臣은 종전대로 유지하였다.⁸⁷⁾ 중국에 파견된 使臣이 復命할 때에는 중국의 회답 咨文, 塘報, 書狀官의 書啓, 首譯의 聞見別單을 肅拜單子와 함께 바쳤다.⁸⁸⁾ 使臣 일행 중 書狀官은 使臣으로 파견된 동안 臺諫을 겸임하면서 일행을 단속하고 날마다 사건을 기록하였다가, 국내로 돌아온 뒤에 기록했던 것을 書啓로 작성하여 首譯의 聞見別單과 함께 올렸다.⁸⁹⁾ 이처럼 書狀官이 使行 기간 동안 사건을 기록했다가 귀국한 뒤에 보고하는 관행은 조선초기에 趙末生이 서장관으로 중국에 다녀온 뒤 그동안 보고들은 내용을 기록해서 올린 것이 계기가 되었다.⁹⁰⁾

조선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고려말기에 일본과 우호 관계를 맺은 이후로 유지해오던 관례를 따른 것이었다.⁹¹⁾ 壬辰倭亂이 발생한 이후로는 두 나라

- 86) 『銀臺便攷』 吏房攷 使臣 “國初, 歲遣朝京之使, 有冬至、正朝、聖節、千秋四行, 謝恩、奏請、進賀、陳慰、進香等使, 則隨事差送。”
- 87) 『銀臺便攷』 吏房攷 使臣 “崇德, 無千秋, 有歲幣使。至順治, 因勅諭, 并三節及歲幣爲一行, 名曰冬至使, 歲一遣, 其他有事之使, 并如舊。”
- 88) 『銀臺便攷』 「吏房攷」 使臣 “使臣復命時, 回咨文及唐報、書狀書啓、首譯聞見別單與入來肅單, 同爲封入”; 『六典條例』 「禮典」 司譯院 總例 “年貢與別使復命日, 書狀官日記、塘報及聞見事件入啓, 首譯聞見事件, 同爲入啓。”
- 89) 『經國大典』 禮典 藏文書 “書狀官, 逐日記事, 回還後, 啓下承文院謄錄”; 『銀臺便攷』 吏房攷 使臣 “書狀官一員。【正五品, 結啣正四品。隨品兼臺, 糾檢一行。書狀官, 逐日記事, 回還後, 與首譯聞見別單, 同爲入啓。】”
- 90) 『通文館志』 권3, 「事大」 赴京使行 “書狀官, 逐日記事, 回還後, 啓下承文院, 出『經國大典』。國初, 趙文剛末生回自京師, 以耳目所覩記, 別爲條啓 書狀官爲聞見事件, 自此始。” 趙末生은 태종 3년(1403)에 賀登極使의 書狀官으로 중국에 파견된 일이 있었다. 『태종실록』 3년 4월 2일 戊申 “賀登極使書狀官趙末生還啓曰: ‘帝命左通政趙居任齋誥命, 都指揮高得齋印章來, 已至義州矣。’”
- 91) 『增訂交隣志』 권5, 「通信使行」 “日本於洪武初, 與我修好, 我國亦遣使修慶弔禮。”

사이의 사신 왕래가 끊어졌다. 그러다가 豊臣秀吉이 죽고 德川家康이 집권한 뒤에 자신이 豊臣秀吉의 정책을 모두 뒤집었다고 밝히고 宣陵과 靖陵을 훼손하고서 도망했던 對馬島의 倭人 2명을 체포하여 보내면서 사신의 파견을 요청하였다.⁹²⁾ 이에 이듬해인 선조 40년(1607)에 回答使 呂祐吉을 파견하면서 사신의 왕래가 다시 시작되었고 조선에서 通信使를 파견하는 계기가 되었다.⁹³⁾ 通信使를 파견할 때에는 上使와 副使 각 1인과 함께 從事官 1인을 파견하였다.⁹⁴⁾ 從事官이 書狀官의 역할을 수행하였으므로 사행 기간 동안의 사건을 기록하였다가 귀국한 뒤에 書啓를 작성하여 보고하는 일도 從事官이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⁹⁵⁾

5. 맺음말

書啓의 본래 의미는 ‘글 또는 문서로 작성하여 아뢰다.’의 의미였고, ‘말 또는 구두로 아뢰다.’라는 의미인 口啓와는 상대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書啓는 口啓와 함께 신하와 국왕 사이의 의사소통과 관련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신하가 국왕에게 직접 구두로 아뢰려면 국왕과 신하가 만나는 자리라야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국왕과 신하가 만나는 행사나 의식이 있을 때에는 입시한 신하가 국왕에게 직접

92) 『增訂交隣志』 권5, 「通信使行」 “及秀吉薨, 關白家康, 因義智致意曰: ‘壬辰之事, 身在關東, 無所豫知 況今盡反平賊之惡, 實非讐怨 願與通和’云 三十九年丙午, 獻犯陵賊, 又請和。”

93) 『銀臺便攷』 「禮房攷」 交隣 “宣祖朝三十九年, 倭獻犯陵賊請和, 至翌年, 遂遣信使, 自是以後倭若來請, 則輒許差遣 【關白卒承襲及傳位時, 請信使】”: 『增訂交隣志』 권5, 通信使行 “翌年丁未, 遣回答使呂祐吉, 【副使慶暹, 從事官丁好寬 ○ 初稱書狀官, 改爲從事官。】 自是羈縻不絕 倭若來請, 則輒許差遣, 而具咨禮部 通信之名, 始此。”

94) 『銀臺便攷』 禮房攷 交隣 “上使一員【文官堂上, 結銜吏曹參議】, 副使一員【文官堂下正三品, 結銜典翰。】, 從事官一員【文官五六品, 結銜弘文館校理 純宗己巳, 許其易地之請, 更定約條, 因新節目減從事官】。”: 『增訂交隣志』 권5, 通信使行 “使一員【文官堂上, 結銜吏曹參議。】, 副使一員【文官堂下正三品, 結銜典翰。】 從事官一員【文官五六品, 結銜弘文館校理。】。”

95) 從事官이라는 호칭은 書狀官을 고친 것이며, 文集에는 從事官으로 일본에 다녀온 관원이 기록한 聞見錄이 다수 실려 있다. 『增訂交隣志』 권5, 「通信使行」 “初稱書狀官, 改爲從事官”: 『東槎日記』 坤 「聞見錄」 “聞見錄【從事所記】”

구두로 아뢰었다. 신하나 관사가 국왕에게 구두로 아뢰지 않고 문서로 아뢰면, 해당 문서는 문서의 출납을 관장하던 승정원에서 承傳色이나 司謁에게 주어 대신 국왕에게 전달하게 하였다.

신하가 국왕에게 구두로 아뢰던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성종 때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徐居正의 건의에 따라 성종 때부터 筭子가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또 이때부터 조선왕조실록에 ‘書啓’가 대폭 증가한 사실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보면 성종 때부터는 신하들이 입시하여 국왕 앞에서 직접 구두로 아뢰거나 특정 문서를 올리는 경우 이외에도, 신하가 국왕에게 아뢴 일이 있으면 승정원에 나아가서 구두로 전달하여 승정원에서 대신 글로 작성해서 올리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성종실록』에 보이는 書啓들은 이를 기록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書啓의 사용은 연산군을 거쳐 중종 때까지 이어졌다.

성종 때부터 대폭 증가하기 시작한 書啓는 중종 때부터 여러 종류의 문서로 분화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중종 때부터는 실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書啓가 줄어들었는데, 그 첫 번째 원인은 書啓 중에서 啓辭가 독립적인 문서로 분화하였기 때문이었다. 두 번째 원인은 후일 草記라는 독립적인 문서로 분화하게 되는 ‘~意啓曰’이나 ‘~言啓曰’로 기록하는 기사가 이때부터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이었다. 그에 따라 중종 이후의 실록에는 ‘書啓曰’로 기록된 기사가 줄어들고 ‘~意啓曰’이나 ‘~言啓曰’로 기록된 기사는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 ‘~意啓曰’이나 ‘~言啓曰’로 기록된 기사를 곧바로 草記라고 할 수는 없고 草記로 분화하기 전 또 다른 형태의 書啓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다.

명종 때가 되면 書啓는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첫 번째 이유로는 중종 때까지도 보이던 중앙아문의 書啓가 명종 때부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것은 書啓에서 독립적인 문서로 분화한 啓辭와 草記 등을 사용하면서 중앙아문의 이름으로 올리던 書啓는 점차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이유로는 중종 때까지도 보이던 外官職의 書啓가 명종 때부터는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書啓와 狀啓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지고 외관직은 狀啓를 사용하면서 外官職의 書啓는 기록되지 않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세 번째 이유로는 명종 때부터는 京官職과 權設職의 書啓만 보이

고 그중 절반은 왕명을 수행한 관원이 수행결과를 보고한 書啓라는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명종 중반 이후로는 왕명을 수행한 관원이 수행결과를 보고한 書啓만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명종 중반 이후에는 書啓가 독립적인 문서로 성립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선조대와 광해군대의 실록에는 왕명을 봉행한 관원이 올린 書啓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하겠다.

書啓의 문서형식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다만 法典과 史料, 현재 남아있는 書啓와 書啓謄錄 등을 참고하여 문서형식을 추정해볼 따름이었다. 傳諭書啓는 서두를 기록하지 않고 바로 본론을 기록하되, 본론에는 傳諭의 과정과 傳諭한 뒤 당사자의 답변인 附奏를 인용형식으로 기록하였으며, 말미에는 서계를 올리는 관원의 單銜과 姓名을 썼다. 御史書啓는 첫째, 서두에는 작성자의 單銜을 쓰고 姓을 쓰는 것이 원칙이나, 單銜 대신 長銜을 쓰기도 하고 姓名을 모두 쓰기도 하였다. 둘째, 본론에는 왕명을 받고 수행한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하고 結辭에는 장계 본론의 結辭와 같이 투식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나, 투식어를 쓰지 않은 경우도 있다. 셋째, 서계의 말미에는 年號+年과 월일 및 작성자의 단함과 성명을 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年號+年 대신 干支를 쓰기도 하고 단함 대신 장함을 쓰기도 하였다.

正祖代 『일성록』에 직접인용형식으로 기록된 802건의 書啓는 그 내용과 작성자에 따라 5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었다. 첫째, 傳諭書啓는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大臣과 山林 등에게 傳諭한 뒤에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로, 전체의 70%인 563건이나 차지하였다. 둘째, 奉審摘奸書啓는 국왕의 명을 받은 관원이 奉審하거나 摘奸하고 그 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로, 전체의 17%인 140건을 차지하였다. 셋째, 御史書啓는 국왕의 명을 받은 御史가 수행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로, 전체의 7%인 54건을 차지하였다. 넷째, 看病書啓는 국왕의 명을 받은 醫官이 신하의 병세를 살펴보거나 치료한 뒤 수행결과를 보고할 때 올리는 書啓로, 전체의 5%인 38건을 차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류에 포함시킬 수 없는 기타 書啓가 7건으로, 전체의 1% 미만을 차지하였다.

이상으로 실록에 수록된 서계의 사례 분석을 통해 口啓의 상대적 의미로 사용되던 書啓가 특정 문서로 성립되기까지의 과정을 밝혀보았으며, 서계의 문서형

식은 정본과 초본이 확인된 傳諭書啓와 御史書啓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일성록』에 수록된 서계의 사례 분석을 통해 서계의 작성자와 내용에 따른 분류를 해보았다. 傳諭書啓와 御史書啓를 제외한 다른 書啓의 문서형식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서계의 정본을 확인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 일은 앞으로 과제로 남긴다.

주제어 : 口啓, 長銜, 單銜, 傳諭, 奉審摘奸, 御史, 看病

투고일(2017. 10. 9), 심사시작일(2017. 10. 11), 심사완료일(2017. 11. 13)

<Abstract>

A Study on *Seogye*

Lee, Kang-Wook *

The original meaning of *Seogye* was a written report and was used as the relative term of *Gugye* which refers to a verbal report. This meaning of *Seogye* continued throughout the Joseon Dynasty. In particular, the usage of *Seogye* substantially increased from the reign of the King Seongjong. *Seogye* started to divide into many independent documents since the reign of King Jungjong. First, *Gyesa* became the first independent document among *Seogye*. *Seogye*, which later evolves into *Chogi*, was recorded as ‘~意啓曰’ and ‘~言啓曰’ and previous *Seogye* was recorded as ‘書啓曰’. Then, *Seogye* which was recorded as ‘~意啓曰’ and ‘~言啓曰’ evolved into an independent document of *Chogi*. Hence, *Seogye* has become a document for a public official who executed the King’s command to make a report since the reign of King Myeongjong.

In regard to the format of *Seogye*, the clear definition has not been confirmed. Only, the format of the document has been presumed based on law books, historical records, *Seogye*’s draft, *Deungrok*.

傳諭書啓 directly recorded body without beginning. At the body of 傳諭書啓, process of delivering king’s command was written. Also, 附奏 which is the answer of the recipient was written in quotation format. At the end of 傳諭書啓, writer’s job title and full name were written.

In relation to the 御史書啓, first, the principal was to put writer’s job title and then his family name at the beginning. However, exceptional cases with full name and job title with official ranking title instead of job title were found. Second, the processes and results of the execution under the King’s command were written at the body of 御史書啓. Basically, the same conventional phrase which is equal to closing remark of 御史書啓’s body and closing remark of *Janggye*’s body was used. But there were some cases

* Institute for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Chosun Dynasty of Korea.

without a conventional phrase. Third, at the end of *Seogye*, era name with year, date, writer's job title, full name were written. Only, some cases used sexagenary cycle instead of era name with year, job title with official ranking instead of job title.

802 cases of *Seogye* were recorded with direct quotation format in the King Jeongjong's *Records of Daily Reflections* and these could be divided into fiv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content and writer. First, 傳諭書啓 is a *Seogye* when a public officer with the King's command makes the report after completing 傳諭 to state councilors and confucian intellectuals, taking up 70% at 563 cases. Second, 奉審摘奸書啓 is a *Seogye* when a public officer with the King's command makes a report after completing *Bongsim* and *Jeokgan*, taking up 17% at 140 cases. Third, 御史書啓 is a *Seogye* when a censor with the King's command makes a report, taking up 7% at 54 cases. Fourth, 看病書啓 is a *Seogye* when a royal physician with the King's command diagnoses the condition of liege's disease and makes a report after cure, taking up 5% at 38 cases. Lastly, 7 cases of other *Seogye* which can not be included in the above category, taking up less than 1% of the total.

Key Words : Gugye (口啓), Job title with official ranking title (長銜), Job title (單銜), Delivering king's command (傳諭), *Bongsim* *Jeokgan* (奉審摘奸), Censor with king's command (御史), Care (看病)